

BSPE 00349-589-7

우리나라 海洋開發技術의 國際  
移轉戰略에 관한 基礎研究

—中國과의 技術協力을 中心으로—

A Basic Study on the International Transfer  
Strategy of Korean Ocean Industrial Technology

1993. 7.

한국해양연구소

# 提 出 文

韓國海洋研究所長 貴下

本 報告書를 “우리나라 海洋開發技術의 國際移轉戰略에  
관한 基礎研究”의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93年 7月 31日

研究責任者 : 柳時融(海洋産業研究그룹)

## 要 約 文

1978년은 中國의 經濟政策이 轉換點을 이룬 해였다. 같은 해에 中國은 對外開發政策을 公式적으로 公表하였으며, 自給自足 및 自主의 既存政策을 轉換하였다. 中國은 漸進的인 政策變化를 취하여 먼저 4個經濟特區를 開放하여 世界市場과의 制限된 接觸을 試圖하고 이를 14個 沿海開放都市로 擴大하였다. 완전히 規制가 풀린 것은 아니지만 中國의 開放政策은 海外直接投資 및 先進外國技術의 導入에 重大한 影響을 미쳤다. 즉 1979년부터 1989년까지 中國의 外國人 直接投資導入 累積額은 154억\$, 技術導入額은 202억\$에 달하였다. 中國經濟에서의 直接投資와 技術導入의 重要性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10여년간의 經驗結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中國과 黃海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立場에서는 世界市場에서 中國이 競爭國으로 抬頭하고 있으므로, '92年末의 兩國 國交樹立以後 同伴者的 關係에서 經濟協力關係를 하루빨리 定立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對中國 直接投資는 '91년-'92년간에 急增하였으며, 技術輸出도 2년간 35件이나 이루어지는 등 우리나라 生産技術의 有·無形的인 移轉이 꽤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中國은 急激한 經濟成長과 景氣過熱로 에너지, 交通, 通信 등 産業基盤施設 不足現象이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 海洋開發技術의 對中國 進出展望도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本 研究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海洋開發技術의 對中國 移轉戰略 樹立을 통해 政府의 海洋科學技術 政策樹立 및 企業의 中國海洋 産業 進出에 도움을 주고 一角에서 提起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産業空洞化 및 부메랑效果 憂慮를 檢討해보는데 그 目的이 있다.

本 研究의 第2章은 技術移轉의 理論的 背景을 提示하고 第3章은 中國의 技術導入 및 直接投資 導入動向을 分析하였다. 그리고 第4章에서는 中國의 技術導入政策 및 法規를 檢討하고, 第5章에서는 國家間的 技術移轉 戰略을 살펴본 후 韓·中兩國의 經濟協力 및 技術協力關係를 分析하고 우리나라 海洋開發技術의 對中國移轉戰略을 提示하였다.

研究의 結果 우리나라의 海洋開發技術中 水産業은 合作投資戰略, 造船業은 라이선싱 戰略, 港灣建設分野는 單獨投資方式, 그리고 海洋에너지資源開發分野는 研究所 또는 企業間的 共同研究開發戰略이 바람직한 것으로 分析되었다.

## SUMMARY

The year of 1978 marks a momentous change in the economic polic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henceforth China). That year China officially proclaimed an open door policy, sharply reversing the Maoist policy of selfsufficiency and autarky. The change in policy was, however gradual in implementation as the country first limited its contact with world markets mainly through the four Special Economic Zones(SEZs) and then slowly enlarged it by opening fourteen coastal cities. Although it is not completely free of restrictions, the open-door policy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flow of direct foreign investment(DFI) and foreign advanced technology to China. Starting in 1979 it increased rapidly reaching the cumulative amount of 15.4 billion U.S. dollars in 1989. (DFI accounted for 3.5 percent of China's total fixed investment in 1988.) While the importance of DFI in the Chinese economy is still growing, a decade of experience with China has revealed many problems and issues.

Because China is gradually coming as the competing country in the world market, the economic cooperation relation after concluding of diplomatic relations has to be established between Korea and China. As the amount of direct investment from Korea to China increased rapidly and technology export reaching 35 cases during recent two years, the explicit and implicit transfer of industrial technology was enlarged considerably. Whilst, China's rapid economic growth and the shortage phenomenon of infrastructure make the possibility of export of Korean ocean industrial technology to China.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some problems and issues relating to the ocean industrial technology transfer between Korea and China and drawing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olicy makers and businessmen.

Chapter II presents a theoretical background of technology transfer and chapter III analyzes the trends of China's technology inflow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Chapter IV reviews China's policy and regulations of technology inflow and chapter V discusses technology transfer strategy between two countries, concludes with a discussion of the prospects for Korean ocean industrial technology transfer to China.

# CONTENTS

Chapter I. Introduction .....	1
Chapter II. Theoretical Backgrounds of Technology Transfer.....	3
Section 1. Concepts and Types of Technology Transfer.....	3
Section 2. Natures of Technology Trade.....	7
Chapter III. China's Inflow of Technology and Direct Investment.....	11
Section 1. China's Technology Import.....	11
Section 2. Current Statu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China.....	16
Chapter IV. China's Policy for Technology Transfer.....	31
Section 1. Introduction.....	31
Section 2. Methods of Technology Transfer.....	33
Section 3. Laws and Regulations for Technology Transfer in China.....	36
Section 4. Technology Transfer in Special Economic Zones and Coastal Cities.....	49
Chapter V. Transfer Strategy of Ocean Industrial Technology to China.....	55
Section 1. Technology Transfer Strategy between Two Countries.....	55
Section 2. 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Technology Trade with China.....	63
Section 3. Current Status of Technology Transfer between Korea and China.....	70
Section 4. Ocean Industrial Technology Transfer Strategy to China.....	76
Chapter VI. Conclusion.....	83
References .....	85



# 目 次

第 1 章 序 論 .....	1
第 2 章 技術移轉의 理論的 背景 .....	3
第 1 節 技術移轉의 定義 및 形態 .....	3
第 2 節 技術貿易의 特性 .....	7
第 3 章 中國의 技術導入 및 直接投資導入 .....	11
第 1 節 中國의 技術導入 .....	11
第 2 節 中國의 外國人 直接投資 導入動向 .....	16
第 4 章 中國의 技術導入政策 .....	31
第 1 節 序 論 .....	31
第 2 節 技術移轉의 方法 .....	33
第 3 節 中國의 技術移轉에 관한 法律 .....	36
第 4 節 經濟特區와 海岸都市에서의 技術移轉 .....	49
第 5 章 海洋開發技術의 對中國 移轉戰略 .....	55
第 1 節 國家間의 技術移轉戰略 .....	55
第 2 節 韓國의 對中國 經濟協力 및 技術協力 .....	63
第 3 節 韓·中間의 國際技術移轉現況 .....	70
第 4 節 海洋開發技術의 對中國協力戰略 .....	76
第 6 章 結 論 .....	83
參 考 文 獻 .....	85





## 表 目 次

〈표 3 - 1〉 先進3國의 對中國 年度別 技術輸出 推移 .....	12
〈표 3 - 2〉 中國의 件當 技術導入 費用 推定 .....	14
〈표 3 - 3〉 形態別 技術導入現況 .....	14
〈표 3 - 4〉 中國 技術導入의 產業別 分布 .....	15
〈표 3 - 5〉 中國의 三資企業(合資·合作·單獨)比較表 .....	18
〈표 3 - 6〉 中國의 外資導入 推移 .....	19
〈표 3 - 7〉 企業形態別 直接投資導入 推移 .....	25
〈표 3 - 8〉 外國의 對中 業種別 直接投資 現況 .....	26
〈표 3 - 9〉 對中國 直接投資의 國別 推移(契約 基準) .....	27
〈표 3 -10〉 中國의 地域別 外國人 直接投資 現況(契約 基準) .....	29
〈표 3 -11〉 外資 및 外資系 企業의 寄與度 .....	30
〈표 5 - 1〉 韓國企業의 對中 直接投資 推移(韓銀許可 基準) .....	65
〈표 5 - 2〉 韓國企業의 對中 直接投資 地域別, 業種別 分布(1992年 5月末 現在) .....	66
〈표 5 - 3〉 中國의 工業部門別 成長率 展望指標(1986-2000) .....	68
〈표 5 - 4〉 韓國의 對中國 直接投資 推移(總投資: 韓銀 許可 基準) .....	71
〈표 5 - 5〉 韓國의 對中國 直接投資現況(實際投資基準) .....	72
〈표 5 - 6〉 우리나라의 對中國 年度別 技術輸出現況 .....	73
〈표 5 - 7〉 우리나라의 對中國 業種別 技術輸出現況 .....	73
〈표 5 - 8〉 韓中經濟協力關係의 變化에 관한 中短期 展望(韓中修交以後-1995) ....	75

## 그 림 目 次

〈그림 3 - 1〉 先進3國의 年度別 對中 技術輸出推移 (단위: 백만\$) .....	13
〈그림 3 - 2〉 中國의 外資導入形態 .....	16
〈그림 5 - 1〉 라이선싱과 外國人直接投資下에서의 國際的 技術移轉模型 .....	61
〈그림 5 - 2〉 우리나라의 對 先進國 海洋開發技術隔差(年數) .....	77
〈그림 5 - 3〉 우리나라의 海洋開發技術 開發段階 .....	78



## 第 1 章 序 論

최근 世界經濟는 經濟의 汎世界化(Globalization)에 따라 國際貿易 및 海外投資의 급격한 伸長을 나타내고 있다. 世界貿易의 伸張率은 1980년 중반이후 세계경제의 實質成長率을 上廻하고 있고, 종래에는 國際去來가 적었던 서비스(金融, 保險, 運輸, 技術用役, 專門서비스)의 무역이 크게 증가하여 서비스무역의 신장율은 상품무역의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外國人投資도 크게 증가하여 世界全體의 外國人 直接投資 流入額은 1986년 757억달러에서 1990년 1,796억달러로 증가하였다.

直接投資에 의해 現地生産이 늘어남에 따라 現地에서의 研究開發도 自然 增加하게 되어, 경제활동의 汎世界化는 科學과 技術活動에 있어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1970년대에 시작된 情報·電子技術의 급속한 발전과 1980년대에 일어난 情報通信과 컴퓨터의 결합에 의한 技術革新은 經濟活動의 國際化를 더욱 촉진하는 契機가 되었으며, 고도의 국제적인 通信手段과 수송네트워크의 整備는 科學技術의 情報流通, 研究者 및 技術者の 왕래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특히 종래의 賦存資源 및 生産費의 比較優位를 바탕으로 한 國際分業構造는 技術要素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구조로 개편되어 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각국은 뒤떨어진 분야의 技術을 移轉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技術을 移轉받기 위한 수단은 크게 구분하여 라이선싱, 海外直接投資와 턴키프로젝트, 技術用役契約 등 기타방법의 3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한편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와 서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中國은 60년대의 우리나라 수출드라이브정책과 같이 自國의 經濟開發戰略을 推進중에 있으며, 經濟成長率도 두자리수 이상에 이르는 등 可視的인 效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는 '92년 말 外交關係 樹立을 前後하여 경제협력관계가 더욱 긴밀해져 '92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對 中國 直接投資件數가 423件, 技術輸出件數가 35件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21.2%, 12.2%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中國은 經濟成長을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工業化를 서두르고 있고 工業化를 달성하기 위해 社會間接資本을 擴充하고 資源開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즉 中國은 港灣建設 및 擴充, 造船所建設 및 水産業, 海運業 등의 海洋産業分野에서 外國의 技術導入 및 投資留置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中國에 海洋開發技術을 이전하는데 있어서 그 基礎研究로서 韓·中間의

直接投資 및 라이선싱에 의한 技術移轉動向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전망함으로써 효율적인 海洋開發技術의 國際移轉戰略樹立에 대한 示唆點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研究의 目的이다.

## 第 2 章 技術移轉의 理論的 背景

### 第 1 節 技術移轉의 定義 및 形態

#### 1. 技術의 定義

辭典적으로 “實用的인 目的에 知識을 適用하는 것”으로 定義되는 (Webster's dictionary) 技術(technology)은 여러가지로 定義될 수 있는데, J.Davidson Frame에 따르면 技術은 “人間이 周圍環境에 대한 統制를 擴大하는데 必要한 知識의 適用”을 의미하고, G.R.Hall과 R.E.Johnson에 따르면 技術은 “業務隨行, 用役提供, 혹은 製品生産을 可能케 하는 知識이나 情報”로 定義된다. 따라서 技術은 機械類, 프로세스, 生産方法 등을 指稱하는 生産技術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관리, 마케팅, 생산노우하우 등을 포함하는 知識이나 情報라 할 수 있으며, 特許權, 工業所有權, 圖面, 設計圖, 運轉指針書, 特殊工具 등과 같은 事物에 內在하거나 個人 또는 組織에 專門知識, 蓄積된 經驗 등으로 體化된다.

技術은 “어떻게 事物들이 自然에서 作用하는가에 대한 知識의 習得”으로 定義되는 科學(science)과는 다르지만, 現代的 技術은 科學을 基반으로 하고 있어 科學과는 밀접한 關係를 맺고 있다. 한편, 技術分野에서 흔히 사용되는 노우하우(know-how)는 특허권을 수반하지 않는 科學者, 엔지니어, 生産者 및 販賣者들이 가지고 있는 體化된 (embodied) 技術로서 정의되는데, 경험적이며 반복적인 행위에 의하여 얻어진다(John V. Granger).

經濟的 概念을 사용하기 위해서 技術을 하나의 商品으로 간주하게 되면, 商品으로서의 技術은 生産, 分配, 消費라고 하는 動態的인 構造로서 把握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技術을 生成(研究 및 開發), 擴散(技術移轉), 應用의 세 단계의 過程으로 파악할 경우 技術政策을 수립하는데 매우 유용한 개념을 얻게 된다. 技術의 창조를 지식의 응용을 위한 하나의 공급이라고 보면, 그 응용은 지식의 國內創造, 그리고 技術輸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요라고 볼 수 있다. 이는 技術開發을 위한 정책이 技術革新의 공급과 技術革新에 대한 수요를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함을 나타내며, 技術政策

도 따라서 (1) 技術의 국내생산 및 분배를 위하여 科學·技術能力을 개발하는 일(國內 技術의 供給), (2) 새로운 技術을 사용하거나 응용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技術革新能力을 개발하는 일,<sup>1)</sup> (3) 그리고 外國技術을 적절하게 評價·選擇·適用·改善하고 國內技術과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外國技術을 조직적으로 수입하는 일(外部供給의 規制)의 세 단계로 나눌 수 있게 된다.<sup>2)</sup>

이 가운데 세번째인 技術의 이전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 技術移轉의 類型

국가간의 技術協力에는 두가지 類型이 있다. 相關국가들의 연구소 또는 기업들이 특정한 技術課題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研究開發活動을 전개하는 경우가 한가지인데, 이 경우에 관련된 연구소 또는 기업은 사전에 役割 및 費用分擔 問題와 협력결과로 개발하게 될 技術의 소유권 및 그 활용문제 등에 대하여 미리 규정해 놓은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동연구에 돌입하게 된다. 이와 같은 類型의 技術協力は 국가간의 技術水準이 비슷하거나 상호 보완적인 技術力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많이 일어나며, 技術開發研究에 소요되는 비용이 엄청나게 과다하고 그 위험도 높아서 분담의 필요성이 절실하거나 한 쪽은 자금지원능력을 갖고 있고 다른 한쪽은 첨단적 研究開發能力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類型의 技術協력이 이루어지게 된다.

국가간 技術協力的 또 한가지 類型은 한 나라의 연구소 또는 기업이 개발에 성공한 技術을 다른 나라의 연구소나 기업에게 전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技術開發에 먼저 성공한 선도국의 기업은 이것을 필요로 하는 다른 나라의 기업들에게 대가를 받고 개발된 新技術을 이전하게 되는데, 이전되는 技術이 첨단의 것일수록 대가는 비싸고 技術을 전수받는 측의 높은 技術水準을 요구하게 된다.<sup>3)</sup>

---

1) 技術革新(technological innovation)은 “新製品의 마케팅, 그리고 新技術工程의 商業的 應用的 結果를 가져올 수 있는 非連續的인 技術的·産業的·商業的 過程”이라고 정의되며, 新製品이나 新生産方式이 研究·開發될 수 있는 최초의 아이디어인 동시에 장래의 有用性이 처음으로 産業에 應用될 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2) 尹錫喆, 「技術蓄積·管理論」, 日新社, 1982, pp. 1-8 참조.

3) 李承勳, “技術協力的 一般狀況”, 「日本の 産業技術」, 서울대학교, 經濟研究所, 1992, p. 253 참조.

한편, 技術의 移轉(technology transfer)은 일반적으로 “計劃된 活動”이라는 점에서 技術의 擴散(technology diffusion)과 차이가 있는데, 技術移轉의 형태에는 다음과 같은 7가지 형태가 있다.<sup>4)</sup>

#### 가. Turn-key 프로젝트에 의한 方式

工業化初期의 後進國 企業은 그 技術力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製品 및 工程에 대한 設計 등을 제공받더라도 독자적으로 생산을 수행해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設計圖面과 함께 資本財, 生産設備 및 核心部品을 공급받고, 技術諮問과 關聯技能의 訓練, 그리고 生産設備의 操作·管理方法을 전수받는 등 해당제품의 生産活動과 關聯된 一切의 技術을 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턴키프로젝트라고 한다. 이와 같은 턴키프로젝트는 技術을 전수받는 기업이 先進國企業의 일방적인 지도만 따르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長點을 갖고 있으나, 비용이 비싸다는 것과 工程, 裝備, 設備가 技術을 전수받는 國家의 環境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갖기도 한다.

#### 나. 라이선스(licence)契約에 의한 方式

원칙적으로 외국자본의 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産業技術, 프로세스 노하우, 商標權(trademark) 등을 계약에 의해 도입하고 그 대가를 로열티의 형식으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純粹한 理論的 形態보다는 많은 變形이 존재하고 있다. 오늘날의 라이선스계약은 特許(patent), 商標權 등 제반의 권리의 이전뿐만 아니라 組織管理, 生産管理 등 技術的·管理的支援을 이전하는 복잡한 패키지(package)로 되어 있다. 라이선스계약에 따른 로열티(royalty)는 라이선스계약이 함유하는 技術의 水準, 技術導入者의 技術能力, 技術供給者間의 競爭의 程度, 技術의 年齡에 따라 결정된다.

4) 尹錫喆, 「技術蓄積·管理論」, 1992, pp.9-10과 科學技術政策研究·評價센터, 「技術移轉의 環境과 戰略에 관한 韓·日 比較研究」, 1990, pp.41-57 참조.

#### 다. 直接投資方式(direct investment)

直接投資方式은 先進國企業이 技術을 필요로 하는 후진국기업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하면서 이루어지는 技術移轉이다. 直接投資에 의한 技術移轉은 후진국이 先進技術을 도입할 때 선택하는 가장 普遍的인 방법이다. 그러나 최근 이 방법에 의한 技術移轉은 先進國과 開途國에서 각각 서로 다른 이유로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多國籍企業(multinational corporation)의 本社가 있는 先進國에서는 多國籍企業을 통한 技術流出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開途國에서는 多國籍企業에 의한 直接投資가 이들 기업에 의한 地域經濟의 장악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反感과 懷疑가 일고 있다.

#### 라. 合作投資方式(joint venture)

合作投資는 2개이상의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동으로 생산하는 방식인데, 주로 技術을 가진 小企業과 資本을 가진 大企業간의 合作, 政治·經濟的인 規制로 인하여 그 지역의 기업과 공동으로 투자해야만 하는 경우, 技術開發投資의 規模와 危險度가 높아 투자위험을 낮추기 위한 경우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技術先進國間에 많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企業利潤의 處分, 再投資, 新規事業 문제에 있어서, 開發途上國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外國資本의 干渉을 배제할 수 있는 라이선스계약을 택하려는 경향이 있다.

#### 마. 技術用役 契約에 의한 方式

技術用役に 의한 방식은 設計圖面의 解析 등 도입된 技術을 현지여건에 맞게 調整·適應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특정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하여 단순한 技術支援契約에 의해 技術서비스를 제공받고 이 과정에서 技術을 습득하는 방법이다.



## 바. 資本財導入에 의한 方式

機資材를 도입하면서 도입자가 공급자로부터 경험있는 技術者를 함께 초청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노우하우技術을 제공받는 등의 방법인데, 다른 방법에 비해 技術移轉規模는 작다고 할 수 있다.

## 사. 人的資源의 交流

마지막으로 인적 자원의 교류를 통하여 技術知識을 취득하는 방법이다. 해외의 技術者를 招聘·雇傭하거나 國內 技術人力을 海外研修 目的으로 파견하여 技術知識을 취득하도록 하는 제반 활동이 이에 속한다.

## 第 2 節 技術貿易의 特性

技術後進國은 이와 같은 技術移轉方法을 적절히 배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技術을 이전받고자 하는데, 본 연구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技術移轉方法을 모두 다룬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에서 설명한 많은 技術移轉方法 가운데 中國側이 技術導入方法으로 가장 선호하고 있는 라이선스계약과 海外直接投資를 대상으로 하여 中國의 技術貿易을 분석하고 있으며, 다른 技術移轉 方法은 技術貿易과 관련된 경우에 한해서 다루기로 한다. 中國의 技術貿易을 분석하기 앞서서 技術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技術貿易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技術後進國은 技術輸入을 통하여 輸入代替財의 生産, 輸出의 增大, 技術의 축적 또는 技術力을 提高하려고 하는 반면, 技術輸出國은 老朽화된 技術의 輸出, 企業進出 및 資本參與, 關聯製品의 市場擴大 등의 汎世界的인 經濟活動戰略을 통한 이윤극대화를 꾀하기 때문에 技術販賣者와 技術購入者간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둘째, 技術의 내용 및 특성이 技術을 개발한 技術所有者에게만 알려져 있기 때문에, 技術開發者는 개발된 技術에 대한 獨占力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技術市場은 技術을 보

유한 技術販賣者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販賣者市場(seller's market)의 특성을 갖게 되며, 技術販賣者는 技術의 移轉條件, 管理, 事後監督 등에 있어서 강한 통제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 때, 技術販賣者의 협상력은 技術自體의 특성에도 좌우되지만 技術購入者의 技術能力, 情報蒐集能力에도 좌우되는데, 販賣者와 購入者의 技術隔差가 크면 클수록 技術販賣者의 협상력은 높게 나타나게 된다.

셋째, 技術은 다른 요소와 함께 거래되기도 한다. 技術은 많은 경우에 生産, 直接投資, 販賣 등과 같은 요소와 함께 거래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工場設計, 生産, 從業員訓練, 經營全般에 걸친 諮問을 同伴하기도 한다. 따라서 技術이라는 요소를 독립적으로 분리하기는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다.<sup>5)</sup>

넷째, 技術貿易은 海外直接投資와 관련된 資本移動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도 많다. 貿易 및 海外直接投資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품수출에서 시작하여 현지생산이나 海外直接投資로 발전되고 이것은 다시 단순한 技術의 수출로 변화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때 商品貿易과 直接投資는 技術貿易과 대체적인 성격을 갖기도 하지만 技術貿易을 창출하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다섯째, 商品貿易은 比較優位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반면, 技術貿易은 絶對優位에 의해 좌우되게 된다. 따라서 技術의 輸出國과 輸入國을 결정하는 것은 技術隔差, 즉 어느쪽의 技術이 絶對적으로 優越한가에 달려있다.

여섯째, 技術貿易의 경우 상대방의 技術과 직접교환하는 크로스라이선스(cross-license)나 技術料를 다른 명목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의 技術貿易額은 統計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많게 된다.<sup>6)</sup>

한편, 상품으로서의 技術은 몇가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공동소비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하나의 기업이 어떤 技術을 생산에 사용할 때 같은 技術을 다른 기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技術은 다른 상품과는 달리 이것을 매각하여도 매각한 기업이 여전히 그 技術을 보유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용상의 非排除性(inexclusivity)으로 인하여 技術去來는 일반적인 상품거래와는 달리 技術의 이동적 성격보다는 확산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둘째, 技術料는 기본적으로 그 技術에 귀속되는 렌트(rent)를 반영한다. 어느 한

5) 權原基, 「國際技術移轉論」, 나남, 1991, pp. 42-43 참조.

6) 齊藤優, 「技術移轉論」, 文眞堂, pp. 262-267 참조.

기업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技術을 개발한 경우 이것을 개발해낸 기업을 제외하고는 특허제도에 의하거나 다른 기업이 그 技術을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技術을 개발한 기업은 렌트를 누리게 된다. 따라서 技術의 렌트는 그 技術에 대한 시장수요의 강도가 높고 다른 기업의 技術力이 뒤떨어질수록 높아지게 된다. 이는 技術後進國이 技術導入을 통하여 技術隔差를 줄이려고 하는 경우에도 그 나라의 技術力이 技術導入料에 영향을 미친다는 면에서 技術力의 향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준다.<sup>7)</sup>

셋째, 技術은 상품으로서의 정보가 불완전하다. 技術의 렌트는 技術의 독점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技術을 개발한 기업은 그 技術이 노후화되기 전에는 그 技術이 모방되고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게 된다. 따라서 新技術에 대한 정보는 불완전할 수 밖에 없으며, 技術開發과 技術導入을 위해서는 技術에 관한 많은 情報獲得이 先行되어야 한다.

---

7) 李承勳, "技術協力の 一般狀況", 「日本の 産業技術」, 1992, pp. 258-260 참조.



### 第 3 章 中國의 技術導入 및 直接投資導入

#### 第 1 節 中國의 技術導入

中國이 '78년 改革·開放政策을 採擇하게 된 가장 커다란 이유중의 하나는 先進國으로부터 부족한 先進技術을 도입하는데 있었다. 특히 1950년대 말 中·蘇紛爭에 휩쓸리기 이전에는 소련으로부터 이른바 156개 중요 사업에 대해 도움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中·蘇 國境紛爭 및 '60년대 중반 이후 발생하여 70년대 중반까지 약 10여년간 계속된 文化大革命은 中國으로서는 技術導入 및 開發 등에 상당한 손실기였다고 할 수 있다. 모택동 사망후 집권한 화국붕주석이 1978년 日本으로부터 대규모 플랜트 수입<sup>1)</sup>을 시도한 것도 그러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표3-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中國은 건국 이래 '90년 말까지 총 4,584件, 385억 9,300만\$의 각종 技術導入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改革·開放政策을 채택한 이후인 1979년부터 12년간 도입한 技術은 총 220억 9,300만\$로 그 이전 30년간에 도입한 금액의 합계가 165억\$였던 것에 비하면 연평균 3.3배 이상의 상당히 놀라운 속도의 技術導入增加라 할 수 있다.

#### 1. 年度別 技術導入 推移

美國·日本·獨逸은 차관제공에서와 마찬가지로 中國에 대한 가장 중요한 技術供與國이다. 즉 <표3-1>에 나타난 통계치처럼 연도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 선진3국은 中國에 대해 매년 적게는 2억5천만\$(1983년)부터 많게는 20억 3,800만\$(1985년) 등을 제공해 오고 있다. 이러한 액수는 中國이 전체 도입한 技術에 대해 금액기준으로 30-70%까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中國의 技術導入에 있어 이들 국가의 비중이 얼마

1) 1978년부터 1980년 사이에 中國은 미·일·독 선진 3국으로부터 대규모의 플랜트 도입을 결정하였다. 이 중 일본은 전체 플랜트 도입의 59.1%, 서독 20.9%, 미국 5.0% 등 전체의 85%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 야심적인 事業은 후에 大量 解約事態를 맞게 되는데 이 가운데는 寶山製鐵所, 南京綜合化學團地, 勝利綜合化學團地도 포함된다. 여기서 日本은 약 3360억엔(당시 美貨 환산 16.4억\$)에 해당하는 플랜트 수출계약이 파기됨. Ryosei Kokubun, "The Politics of Foreign Economic Policymaking in China: The Case of Plant Cancellation with Japan," *The China Quarterly*, 1980, pp.19-44 참조.

나 큰지를 알 수 있다.

<표3-1> 先進3國의 對中國 年度別 技術輸出 推移

(단위: 건수 및 100만\$)

구 분	미 국		일 본		독 일		소 계		총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49-1979	N. A	N. A	N. A	N. A	N. A	N. A	N. A	N. A	95	16500
1980	N. A	N. A	N. A	N. A	N. A	N. A	N. A	N. A	115	1980
1981	N. A	N. A	N. A	N. A	N. A	N. A	N. A	N. A	73	110
1982	N. A	N. A	N. A	N. A	N. A	N. A	N. A	N. A	102	360
1983	46	173	44	23	43	54	133	250	219	560
1984	88	192	73	344	70	153	231	689	332	950
1985	138	692	175	551	124	795	437	2038	665	2960
1986	169	657	175	787	108	211	452	1655	744	4450
1987	119	673	138	706	109	289	366	1668	581	2980
1988	101	256	81	272	66	419	248	947	437	3550
1989	59	144	52	203	46	430	157	777	328	2920
1990	34	322	43	92	40	133	117	547	232	1270
총 계	754	3109	781	2978	606	2484	2141	8571	4584	385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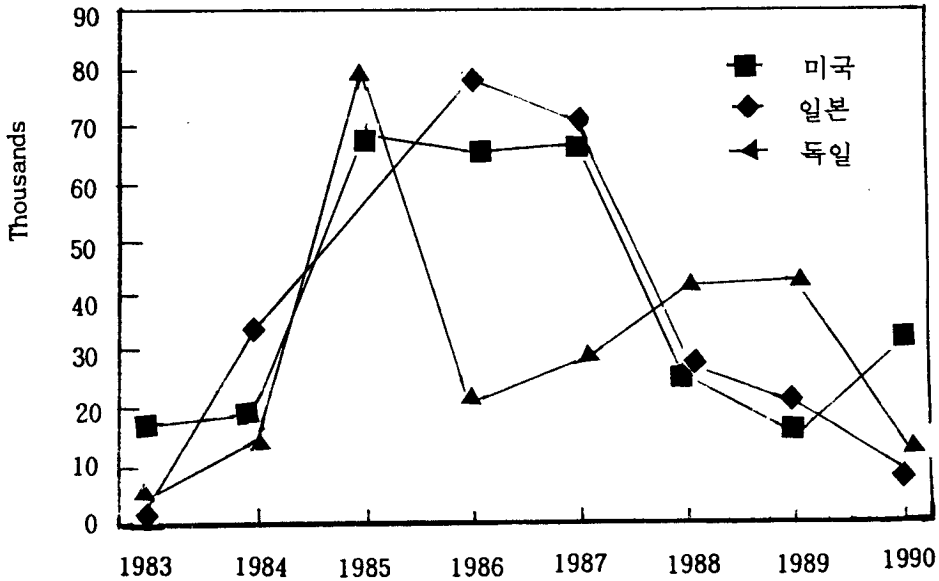
주: 각국의 총계금액은 1983-1990년간의 합계임.

자료: 「中國對外經濟貿易年鑑」, 各年호.

국가별로는 어느 국가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지는 않다. 즉 금액면에서 美國이 1983년과 1990년에 가장 높은 技術提供國이었던 반면, 日本은 1984, 1986, 1987년이 각각 가장 중요한 技術供與國이었다. 독일 또한 1985, 1988, 1989년에는 中國에 대한 가장 중요한 技術供與國이었다.

技術移轉과 관련 나타난 한가지 특징은 이들 3국이 다소의 浮沈은 있으나 <그림 3-1>에서 나타난 것처럼 技術提供額面에서 3국이 같은 행보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도표에서 美國, 日本, 獨逸의 對中 技術移轉 금액변화가 연도별로 보아 거의 같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여타 형식의 경제진출과 달리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政治變動과 어떤 관련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즉 선진 3국의 對中 技術提供에서 국가별로 다소의 편차가 있을 수 있겠으나 공동보조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며 특히 1985-1986년을 기점으로 오히려 금액면으로 보아 하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또 하나의 해석은 中國내부의 경제사정과 연관이 있다. 즉 1985-1988년간은 中國經濟에 있어서

高速成長(高度膨脹經濟)期로써 각 부문에서 이들 선진3국으로부터의 技術輸入이 활발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림3-1> 先進3國의 年度別 對中 技術輸出推移 (단위: 백만\$)

## 2. 件當 導入規模 變化推移

中國이 정부수립이래 도입한 技術의 건당 평균 도입금액은 840만\$이었고, 改革·開放採擇 以前時期(1949-1979)에는 건당 평균 2180만\$이었다. 이러한 건당 평균금액은 1980년에 다소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1720만\$로 상대적으로 1981년 이후의 건당 평균 技術導入金額 540만\$에 비해 크게 높은 금액이다. 이는 우선 改革·開放政策 以前에는 대형 공장건설사업에 대한 소위 플랜트(plant)수입이 주종을 이루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中國은 技術移轉을 플랜트, 라이선싱, 技術서비스, 컨설팅 및 합작생산 등 다섯가지로 분류하고 있다.<sup>2)</sup> 자료획득이 가능한 1981년 이후부터의 形態別 年度別

2) 이들 技術導入에 대한 구체적인 차이는 産業研究院, 「中國의 對外開放과 技術導入」, 地域情報시리즈, 1989, pp. 56-61 참조바람.

技術導入 現況이 <표3-3>에 나타나 있다.

<표3-2> 中國의 件當 技術導入 費用 推定

(단위 : 100만\$)

구 분	미 국	일 본	독 일	전 체
1949-1979	N.A	N.A	N.A	21.8
1980	N.A	N.A	N.A	17.2
1981	N.A	N.A	N.A	1.5
1982	N.A	N.A	N.A	3.5
1983	3.8	0.5	1.3	2.6
1984	2.2	4.7	3.0	2.9
1985	5.0	3.1	6.4	4.5
1986	3.7	4.5	2.0	6.0
1987	5.7	5.1	2.7	5.1
1988	2.5	3.4	6.3	8.1
1989	2.4	3.9	9.3	8.9
1990	9.5	2.1	3.3	5.5

자료: 「中國對外經濟貿易年鑑」, 각년호 통계로 부터 계산.

<표3-3> 形態別 技術導入現況

(단위: 건수 및 100만\$)

구 분	1981-85		1986		1987		1988		1989		1990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플랜트	604	3380	328	3652	267	2098	212	3020	194	2724	105	501
라이센싱	585	588	305	420	235	351	169	477	96	148	101	227
기술서비스	89	404	46	236	30	16	27	14	13	38	5	3
컨설팅	49	25	31	121	24	10	19	28	14	62	9	5
합작생산	70	556	34	136	25	510	10	10	11	7	12	538
합계	1397	4953	744	4456	581	2985	437	3548	328	2979	232	1274

자료: 中國對外經濟貿易年鑑, 각년호 참조

우선 형태별 구성으로 보아서는 中國의 海外技術導入의 대부분이 플랜트수입임을 알 수 있다. 즉 연도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1990년의 39.3%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시기에 플랜트수입은 전체 技術導入額의 70-90%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건당 평균도입금액에 있어서도 플랜트도입(건당 900만\$)은 합작생산형식(평균 1,000만\$ 수준)과 함께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技術導入國으로서의 단순한 플랜트도입보다는 공동생산 양식을 채택하는 것이 技術移轉이나 비용절감 차원에서 우세하다고 할 수 있으나 技術供與國으로서의 노우-하우의 이전을 기피하기위해 플랜트 수출에 주력할 것이다.

中國의 경우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여 1979년 이전의 초대형 技術導入事業보다는 서서히 플랜트 도입을 하되 경제적 효율과 자금절약 측면도 깊이 고려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3. 技術導入의 産業別 現況

技術導入의 산업별 분포는 우선 두가지 통계자료가 있는데 그 하나는 「中國對外經濟貿易年鑑」에 소개된 것이고 또 하나는 「中國經濟年鑑」에 소개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 통계는 단편적이며 연도에 따라 분류방식이 상이하여 결과적으로 연도별 비교를 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가장 최근 2년간에 걸친 산업별 技術導入現況을 <표 3-4>에 제시하며 약술하는데 그치기로 한다.

<표3-4> 中國 技術導入의 産業別 分布

(단위: 건수 및 100만\$)

구 분	1989		1990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기계전자	27	153	59	603
경 공 업	9	110	44	151
야 금	23	146	20	130
교통 및 운수	N.A	N.A	14	105
방직공업	5	49	8	56
화 공	31	823	15	55
에 너 지	15	802	13	49
건축자재	N.A	N.A	5	47
통 신	42	147	14	16
기 타			45	62

자료 : 1990년 통계는 「中國對外經濟貿易年鑑」, 1991년판,  
1989년 통계는 「中國經濟年鑑」, 1990년판에 근거함.

앞에서 제시한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1990년 技術導入에 있어 초보적인 산업분포를 보면 기계 및 전자산업이 건수는 물론이고 금액면으로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는 輕工業<sup>3)</sup>, 冶金, 交通 및 運輸關聯순으로 技術導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분류는 대체로 中國측이 원하고있는 化工, 에너지, 通信등의 高技術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技術供與國의 技術移轉에 대한 기피증을 입을 수 있다.

3) 중국에서의 경공업 개념정의는 서방선진국과 차이가 난다. 즉 중국에서의 경공업은 생활소비관련 제품으로 식품, 음료, 방직, 방적, 모피, 제지, 문교, 화학,약품, 일용 금속제품, 소공구 등이 포함됨.

## 第 2 節 中國의 外國人 直接投資 導入動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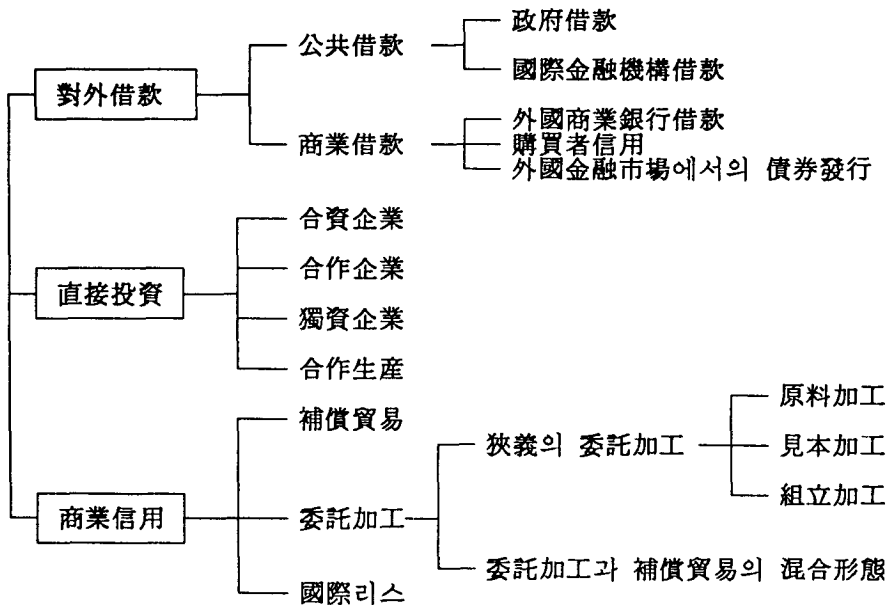
### 1. 現 況

#### 가. 外資導入 形態

中國의 外資導入은 크게 ① 외국정부,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관 및 민간은행으로부터의 借款, ② 合資, 合作, 獨資(100% 外資形態) 등의 '三資企業'과 共同開發(보통 石油共同開發), ③ 商業信用(commerce credit: 리스, 보상무역, 위탁가공, 조립)등으로 분류된다.

1978년 12월에 개최된 第 11期 共產黨 中央委員會 第3次 全體會議(11期 3中全會)에서 改革·開放路線이 공식 채택됨으로써 直接投資 유치가 시작되었는데, 外資導入 초기에는 直接投資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많았고 실제 경험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外資留置를 위한 제반여건이 미비하였기 때문에 경제건설에 필요한 外資는 대부분 차관도입으로 조달되었다. 그러나 沿海地域을 따라 대외개방지역이 확대되고 直接投資 關聯法制와 優待措置 등 投資環境이 점차 정비되면서, 直接投資의 도입이 촉진되었다. 최근의 外資導入 정책도 直接投資를 증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림3-2> 中國의 外資導入形態



## 나. 直接投資의 형태

외국인 直接投資에는 合資企業, 合作企業, 單獨企業, 합작개발 등 4가지 형태가 있으나, 合資·合作·單獨(三資)기업이 가장 일반적인 類型이다.

### (1) 合資企業

合資企業은 '中外合資經營企業法'을 기초로 설립된 中國內 법인으로 中國法律의 보호를 받게된다. 合資企業은 합자쌍방이 출자비율에따라 이익을 배분하고 출자액한도내에서 有限責任을 지며, 설립계약에는 '涉外經濟契約法'이, 설립이후 기타 中國企業과의 계약에는 '經濟契約法'이 적용된다. 合資企業은 中國側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유치방식으로서, 中國側은 통상 建物·設備·土地使用權 등을 현물투자하고 현금투자는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外資側은 中國內 諸手續節次, 政府와의 交渉, 國內에서의 物資調達·製品販賣 등을 中國側에 일임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 (2) 合作企業

'中外合作經營企業法'에 따라 설립되는 中國企業 법인으로 유한책임회사로 등록하거나, 법인형태를 취하지 않고 위원회 형식으로 계약에 의거 운영되는 2가지 형태가 있다.

中國側이 출자하는 現物, 즉 建物·土地 등의 使用料 價格算定이나 評價가 어려운 경우 쌍방이 출자하는 자산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外資側에서 보면 100% 출자가 된다. 合作企業의 경우에는 출자비율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손익배분은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외국측 투자자는 投資元金과 일정한 利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분배비율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合作契約 滿了後 資產所有權을 中國側에 이양하는 조항이 계약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外資側에서 보면 설비 및 技術의 장기수출신용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다.

### (3) 獨資企業

'外資企業法'에 따라 설립된 100% 外資의 中國企業 법인으로 경영관리에 있어 완전 독립이 허용된다. 조직과 운영은 법률상 合作企業에 준하도록 되어 있으며, 설립허가 신청은 직접 제출한다. 자신의 독특한 경영관리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

나, 輸入代替 또는 先進技術業種이 아닌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생산제품의 대부분을 수출하여야 하는 등 불리한 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對中投資 중에서 독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늘고 있다.

〈표3-5〉 中國의 三資企業(合資·合作·單獨)比較表

	合資經營企業	合作經營企業	單獨投資企業
基本法規	◦ 中外合資經營企業法 ◦ 동법 시행세칙	◦ 中外合作經營企業法	◦ 外資企業法 ◦ 동법 시행세칙
設立 및 登錄	◦ 협의서, 계약서, 정관을 對外經濟貿易部 및 수탁기관에 설립신청 ◦ 인가후 工商行政管理局에 등기	◦ 좌동	◦ 설립신청서 제출 ◦ 외자기업설립허가 신청서정관, F/S보고서 등 제출 ◦ 工商行政管理局등기
組織形態	◦ 有限責任公司, 출자자 쌍방은 합자기업에 대해 출자액 한도내에서 책임	◦ 법인형 합작회사와 비법인형 합작회사	◦ 有限責任公司, 단 허가를받아 기타 책임형식도 가능
登錄資本	◦ 합자기간중 등록자본 감소불가, 즉, 합자기간중 투자자금회수 불가 ◦ 외국측 출자비율 25%이상	◦ 합작기간중 투자자 자본 회수 가능	◦ 경영기간중 등록자본 감소불가
出資方式	◦ 현금, 건물, 기계설비, 공업소유권, 노우하우, 토지사용권 ◦ 현물출자는 반드시 금액으로 환산	◦ 현금, 현물, 토지사용권, 공업소유권, 비특허기술, 기타재산권, 노무출자. ◦ 금액으로 환산할 필요없음.	◦ 兌換性있는 외국화폐, 기계설비, 공업소유권, 특허기술등 (단, 산업소유권, 특허기술은 등록자본의 20%이내) ◦ 다른중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한 人民幣 이윤 ◦ 현물출자는 금액으로 환산
資本拂入時期	◦ 일괄불입: 6개월 이내 ◦ 분할불입: 3개월 이내, 1회불입(단 1회 불입금은 등록자본의 15%이상)	◦ 계약서에 의함.	◦ 영업허가후 30일 이내에 등록자본 15%이상 납입 ◦ 3년 이내 전액출자

자료: 對外經濟政策研究院 北方地域情報센터, 「中國便覽」, 1992. P. 299

#### 다. 外資導入 推移

借款과 直接投資의 비중을 보면, 대외개방이 시작된 1979년부터 투자환경에 대한

기초적인 제도정비가 이루어진 1982년까지는 借款導入이 直接投資보다 많았으며, 1983-1985년은 直接投資가 차관도입을 상회하였다. 그러나 1986-1988년에는 다시 차관도입이 直接投資를 상회하였고, 1988년부터도 直接投資가 차관도입을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1979-1991년 累計는 계약액 기준으로 전체 차관도입액이 639.94억달러, 直接投資가 523.37억 달러, 기타 외국인투자가 53.60억 달러에 달했다.

<표3-6> 中國의 外資導入 推移

(단위:백만 달러)

연 도	총 계		대외차관		직접투자		기타 외국인투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979-82	949	20,548	27	13,549	922	6,010	989
1983	522	3,430	52	1,513	470	1,732	135
1984	1,894	4,791	38	1,916	1,856	2,651	224
1985	3,145	9,867	72	3,534	3,073	5,931	402
1986	1,551	11,737	53	8,407	1,498	2,834	496
1987	2,289	12,136	56	7,817	2,233	3,709	610
1988	6,063	16,004	118	9,813	5,945	5,297	894
1989	5,909	11,479	130	5,185	5,779	5,600	694
1990	7,371	12,086	98	5,099	7,273	6,596	390
1991	13,086	19,583	108	7,161	12,978	11,977	445
1979-1991	42,779	121,661	752	63,994	42,027	52,337	5,330

자료: 「中國統計年鑑」, 1991년.

*China's Latest Economic Statistics*, March, 1992(Part1).

## 2. 外資導入政策

### 가. 直接投資 制度의 整備

#### (1) 開放地域의 擴大

中國에서 대외개방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곳은 廣東省과 福建省이었다. 1979년 7월 중앙정부는 두 省의 대외활동을 포함한 경제운영에 자주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外貨輸入 留保制와 財政請負制 같은 특수정책과 탄력적인 조치를 실시하였고, 1980년에는 廣東省의 深圳, 珠海, 汕頭와 福建省의 廈門에 경제특구가 설치되었다.

1984년에는 개방지역이 연해지역 전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즉, 1984년 4월, 14개 연해항만도시를 지정하였는데, 이들 연해개방도시에는 外資와 先進技術의 도입을 통한 공업도시화를 도모하기 위해 經濟技術開發區가 설치되었다. 1985년 2월에는 揚子江과 珠江, 민남·廈門 주변의 3개 三角洲에 沿海經濟開放區가 설치되었는데, 이들 지역은 개방도시와는 달리 도시지역 외에도 縣지역이 포함됨으로써 개방지역이 선에서 면으로 확대되는 전기가 되었다.

1988년 1월 趙紫陽의 沿海地區 經濟發展戰略에 따라 3개 삼각주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으며, 3월에는 山東半島, 遼東半島, 環渤海地區의 일부 시와 연해개방도시 관할 縣이 沿海開放區로 지정되었다. 7월에는 대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海南島를 省으로 승격시켜 5번째 經濟特區로 지정하였다.

대외개방지역은 계속 확대되어 1990년에는 上海의 浦東地域을 종합적인 공업·상업·무역·금융 중심지로 개발하여 제2의 홍콩으로 육성한다는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으며, 1991년 6월 국무원이 滿洲里, 綏芬河, 黑河, 훈춘 등을 邊境貿易開放區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中國의 낙후지역과 연해지역을 연계하여 7대 공동경제발전지구(長江沿岸地區, 珠江三角洲地區, 北京·天津·河北·山東·遼寧으로 이어지는 環渤海地區, 西南 및 華南地區, 西北地區, 中原地區, 東北地區)를 개발·개방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揚子江 유역의 27개 도시를 개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 (2) 關聯制度的 改善

1979년 7월에는 '中外合資經營企業法'이 제정됨으로써 中國에 대한 直接投資의 법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4년후인 1983년 9월에는 '合資企業法實施細則'을 제정함과 동시에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이윤발생후 2년간 면세, 그 후 3년간은 50%를 감면토록 하였다.

直接投資 도입제도의 정비는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1986년 1월에는 국무원이 '合資企業의 外換收支均衡 問題에 관한 規定'을 제정하여 先進技術 도입 제품과 수입대체 제품에 대해 국내판매를 인정함으로써 엄격히 규제해 왔던 국내시장을 부분적으로 개방하였다. 또한 先進技術企業과 제품수출기업에 대해 企業所得稅率 減免, 土地使用料 輕減, 資金의 優先的 供給 등 일련의 조치를 포함하는 '外國人投資獎勵規定'을 발표함으로써 直接投資 유치를 위한 노력을 더욱 확대하였다. 아울러 1986년 4월에는 '外資企業法'을 제정하여 독자기업의 설립을 법적으로 보장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直接投資 관련제도의 정비는 완결되고 있다. 먼저 1990년 4월에는 '中外合資經營企業法'을 개정하여 ① 外國人 董事長<sup>4)</sup> 認定, ② 無償沒收에 대한 危險 除去, ③ 合資期間의 撤廢 등 合資企業의 經營環境을 크게 개선하였다. 5월에는 2개의 土地關聯 法規를 公布하여 外國人에 의한 土地使用權의 有償讓渡와 外國資本에 의한 大規模 不動產開發도 가능하게 되었다. 國內企業의 資金不足現象으로 인해 獨子企業의 유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12월에는 '外資企業法 施行細則'과 함께 '外商投資企業 및 外國企業 所得稅法'을 제정하여 合資, 合作, 獨資企業의 세율을 통일함으로써 독자기업의 설립이 더욱 증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3) 直接投資 獎勵 및 制限業種의 設定

中國에서의 외국인투자 업종에 대한 제한은 크게 법률에 의한 제한과 정책적인 제한으로 구분된다. 中國은 '合資企業法 實施細則'에서 최초로 외국인 투자를 허가하는 업종으로 자원개발, 제조업, 농·림·수산업, 관광·서비스업 등 6개 분야 21개 업종을 제시하였다.

1984-85년의 제1차 투자붐이 일어났던 시기에 관광·서비스업과 음식숙박업 등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1985년에는 외국인투자를 장려하는 업종, 품목, 技術목록(39종)과 제한하는 업종, 품목목록(12종)을 지정하였다. 장려 업종으로는 고도의 技術集約 産業, 원자재 생산 등 기초산업 및 자원조사·개발 사업이 포함되었으며, 제한업종으로는 일부 서비스업과 (내구)소비재 완제품 생산, 技術水準이 낮고 투자기간이 짧은 반면 이익률이 높은 부문, 先進技術導入 효과가 극히 미미한 부문 등이 포함되었다. 이는 기본적인 투자환경의 개선 없이 업종만을 제한하게 되어, 결국 直接投資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外資企業法 實施細則'에서는 국내상업, 무역업, 보험업과 통신업에서의 독자기업 설립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공사업과 교통·운수업, 부동산, 신탁투자, 리스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1989년 3월에는 '當面한 産業政策 要點에 관한 國務院의 決定'이 채택되어, 外資導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直接投資에 대해 제한항목, 금지항목, 장려항목 등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4) 董事長이란 우리나라에서의 株式會社 理事會의 理事長을 말한다.

### 3. 直接投資 導入動向

#### 가. 段階別 推移

中國의 直接投資導入 推移를 보면, 1979년부터 1983년까지 개방초기 5년간 中國에 대한 直接投資는 극히 미약하였으나, 1984년과 1985년에는 제1차 투자붐이 일어났다. 또한 1986년 投資業種의 制限과 中國經濟의 沈滯에 따른 일시적인 감소에 이어 1988년부터 1989년 상반기까지 제2차 투자붐이 일어났다. 그러다가 黨 13期 3中全會(1988년 9월)이후 '治理整頓'과 緊縮政策 實施에 따른 國內經濟 沈滯와 天安門事態 以後 西方의 經濟制裁 措置로 直接投資의 증가추세가 급격히 둔화되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에는 安定的인 經濟成長基調의 定着과 西方의 制裁措置 撤回로 中國에 대한 直接投資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979-1991년 中國의 直接投資 도입은 直接投資 環境整備 過程과 導入狀況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第1段階 : 直接投資 制度의 導入段階(1979-1983)

1979-1982년은 合資企業法이 공포되는 등 關聯 法規가 整備되고 社會間接資本에 대한 기본적인 建設이 시작된 시기로 이 기간 동안 外國企業의 對中直接投資는 연간 약 230건 정도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 기간에는 廣東省과 福建省의 경제특구에 대한 홍콩계 화교들의 투자가 대부분이었고, 企業形態에 있어서는 合作企業이 대종을 이루었다. 5년간 총 投資件數 中 合作形態가 86%, 合資形態가 9%, 獨資形態가 3.6%를 차지하였으며, 계약액 기준으로는 총계약액 4,608만 달러 중에서 합작이 2,727만 달러로 60% 정도를 점유하였고 合資와 獨資의 比率은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 (2) 第2段階 : 1次 對中投資 增加段階(1984-1985)

1979-1983년이 투자가 비교적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라면 1984-1985년은 對中投資가 고조되었던 시기에 해당된다. 1984년부터 直接投資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건수에 있어서 전년대비 3.9배로 늘어났고, 1985년에는 66%가 증가하여 제1차 對中 投資붐이 일어났다. 이것은 1983년 '合資企業法 實施條例'의 제정을 계기로 中國 정부가 直接投資에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였고, 개방지역을 14개 沿海 開放都市로 확대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中國經濟全般에 걸쳐 統制가 緩和되면서 經濟가 호



향을 누리고 있었다는 점이다.

### (3) 第3段階：構造轉換 및 第1跳躍 段階(1986-1989年 上半期)

第1次 투자붐이 일어났던 1984-85년 기간 동안의 外國人 直接投資는 호텔, 관광, 음식·숙박 등 서비스업종에 집중된 반면 製造業에 대한 投資는 극히 부진하여 中國 정부가 일부 서비스업종과 消費財完成品 및 落後된 技術에 의한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開放 初期의 過熱開發現象은 海外 直接投資가 急增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으나, 개발에 필요한 原資材 輸入의 急增, 通貨量의 增大와 消費性向 上昇에 따른 消費財 輸入의 급증으로 인해 中國의 外換保有庫를 급격히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외환 고갈 현상의 치유를 위해 中國政府는 外換統制를 강화하여 해외로부터의 자본재 및 부품도입을 위한 外換使用까지도 제한하였다. 또한 1985년 봄 이후에는 종래의 성장정책에서 緊縮政策으로 旋回함으로써 企業의 經營資金 調達도 더욱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전반적인 經營與件의 惡化는 곧바로 直接投資의 萎縮을 초래하여, 1986년에는 件數와 契約額이 모두 전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되었다.

1986년 10월 國務院은 直接投資의 活性化와 投資構造의 改善을 위해 先進技術企業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雇用과 賃金決定의 自律權 保障, 內需市場 進出에 대한 選別的 許容, 外換收支均衡 解決方案 등 22개 조치를 발표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1988년에는 山東半島 및 遼東半島開放區를 개방하고, 海南省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등 개방지역을 沿海省·市 全域으로 擴大하였다. 그 결과 1987년부터 투자가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여 1988년-1989년 천안문 사태 이전까지 제2차 투자붐이 일어났다.

이 시기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1986년을 기점으로 투자업종이 종래의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1979년-1985년 기간동안 건수기준으로 전체 直接投資의 42.7%에 불과했던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1986년-1989년 기간에는 83.5%로 높아진 반면 호텔건설, 음식숙박업, 상업 등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크게 감소하였다.

### (4) 第4段階：第2跳躍 段階(1989年 下半期 - 現在)

1988년 9월 景氣過熱과 急速한 物價上昇에 對處하기 위해 投資撤回 및 金融緊縮 등 '治理整頓' 政策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국내경제는 급속히 경색되어 기업의 경영자금 부족현상, 에너지 공급 규제 등 全般的인 經營與件이 急激히 惡化되었다. 특히 直接投資와 관련하여 호텔, 사무용 건물은 물론 비생산적인 항목에 대한 허가를 강력히 규제하

거나 지연시키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더하여 1989년 6월 천안문사태 발생으로 西方先進國의 經濟制裁 措置가 취해지면서 中國에 대한 投資危險度(country risk)가 높아져 直接投資를 위축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여건의 악화로 直接投資는 1989년 하반기 이후 증가추세가 급격히 둔화되기 시작하여 1990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에 비해 건수로는 8%, 금액으로는 22%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0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0년 한해 동안에는 건수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다소 증가하였다.

1991년에는 直接投資의 鈍化趨勢가 급격히 反轉되어 件數와 契約額 모두 史上 最大 值(12,978건, 120여억 달러)를 기록하여 제3차 투자붐이 일어났다. 1992년에는 1991년에 이어 계속 증가하여 1/4분기 현재 4,172건(전년동기 대비 87%증가)에 계약액은 55억 8,300만 달러(전년동기대비 152.5%증가)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투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中國의 對外關係의 正常化와 國內經濟의 安定的 成長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1990년 6월 美國이 MFN연장을 가결하였고, 7월 휴스턴 정상회담 이후 日本이 제3차 엔차관 재개를 선언하였다. 또한 북경 아시안게임 이후 EC국가들이 中國에 대한 經濟規制를 撤回하게 됨에 따라 中國의 대외관계가 정상을 회복하게 되었다. 또한 中國政府가 金融統制를 일부 緩和하여 기업의 경영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국내경제가 회복되어 7%의 성장률을 달성하였고, 물가상승도 3%에 그쳤다.

이러한 경제여건의 변화와 함께 中國政府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투자유치를 증대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즉, 外資系 企業의 經營與件 改善을 위해 ① 赤字企業에 대한 金融支援 強化, ② 시멘트, 木材, 石炭, 鋼材, 建資材 등 원자재와 에너지에 대한 우선 供給 및 원자재의 원활한 調達을 위한 物資供給公社 設置, ③ 국내경기 부진으로 판매가 부족했던 자동차 등 一部 製品에 대한 在庫購買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1990년에 이루어진 '合資企業法'의 改定, '外資企業法 實施條例', 土地開發 關聯法, 統一稅法 制定 등 일련의 法規整備은 1991년의 直接投資 급증을 뒷받침해 주었다.

#### 나. 形態別 推移

1985년까지는 合作企業이 전체 直接投資의 60.5%(건수기준)를 차지하여 대종을 이루었으나, 1986년 이후부터 합작형태는 감소한 반면, 合資企業과 獨資企業 형태의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1991년말 현재 건수기준(누계)으로 合資企業이 58.7%, 合作企業이

26.4%, 獨資企業이 14.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986년 4월 '外資企業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부진하였던 독자기업이 1988년 이후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여 1990년부터는 合作企業 수를 능가하고 있다. 조자양 총서기가 1988년 1월 沿海地區 經濟發展戰略에서 종래의 三資企業의 순서를 合資, 合作, 獨資에서 獨資, 合資, 合作의 순으로 취급하고 외국경영자에 의한 위탁경영을 제안함으로써 독자기업의 설립이 급속히 증가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 12월에는 동법 시행세칙과 함께 '外商貿易企業 및 外國企業 所得稅法'을 제정하여 합자, 합작, 독자기업의 세율을 통일함으로써 독자기업의 설립이 더욱 증가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표3-7> 企業形態別 直接投資導入 推移

(단위 : 백만 달러)

	합자경영		합작경영		독자기업		합작개발	
	건 수	계약액	건 수	계약액	건 수	계약액	건 수	계약액
1979-82	83	127	793	2,727	33	332	13	1,422
1983	107	188	330	503	15	40	18	1,001
1984	741	1,067	1,089	1,484	26	100	-	-
1985	1,412	2,030	1,611	3,496	46	46	4	360
1986	892	1,375	582	1,358	18	20	6	80
1987	1,395	1,950	789	1,283	46	471	3	5
1988	3,909	3,134	1,621	1,624	410	481	5	89
1989	3,659	2,659	1,179	1,083	931	1,654	10	204
1990	4,091	2,704	1,317	1,254	1,860	2,444	5	194
1991	8,395	6,080	1,778	2,138	2,795	3,667	10	92
1979-1991	24,684	21,314	11,089	16,950	6,180	9,255	74	3,448

자료: 「對外經濟貿易年鑑」, 1978-91/92, 「中國統計年鑑」, 1991년.

1991년 자료는 日本國際貿易促進協會, 「國際貿易」, 1992년 5월 5일

#### 다. 業種別 推移

1979 - 85년 기간 동안 건수기준으로 전체 直接投資의 42.7%, 계약액 기준으로 26.4%에 불과하던 제조업에 대한 直接投資비중이 1986년 이후 급격히 높아져 1990년에

는 각각 90.6%와 81.5%를 차지하였다. 반면 호텔건설, 음식숙박업, 상업 등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계속 감소하여 1990년에는 1.3%(건수 기준)에 불과하였다.

<표3-8> 外國의 對中 業種別 直接投資 現況

(단위 : 백만 달러)

업종	1979-85		1986-88		1989		1990		1991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금액
농·목·어업	445	512	408	395	183	121	223	122	220
광공업	2,696	3,943	7,815	6,438	5,097	4,460	6,586	5,375	9,531
건축업	344	259	130	226	58	67	43	181	134
교통·통신	260	248	211	141	49	52	51	36	95
부동산·공공사업	816	4,367	672	3,618	176	524	158	452	1,500
상업·음식숙박·유통	791	1,317	186	193	72	67	96	106	174
해양석유개발	35	2,783	14	174	10	204	5	194	92
기타	934	1,493	240	655	34	105	111	130	231
총계	6,321	14,922	9,676	11,840	5,779	5,600	7,273	6,596	11,977
광공업의 비중	42.7	26.4	80.8	54.4	88.2	79.6	90.6	81.5	79.6

자료: 「對外經濟貿易年鑑」, 1978-91/92, 「中國統計年鑑」, 1991년.

1991년 자료는 日本國際貿易促進協會, 「國際貿易」, 1992년 5월 5일

제조업의 비중이 증가하게 된 것은 1984-1985년의 제1차 투자붐이 일어났던 시기에 관광·서비스업과 음식숙박업 등의 업종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1985년 外國人投資 獎勵業種, 品目, 技術目錄(39종)과 제한하는 업종, 品目目錄(12종)을 지정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고도의 技術集約 産業, 원자재 생산 등 기초산업 및 자원조사·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관광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서비스업종과 (내구)소비재 완제품, 技術水準이 낮고 투자기간이 짧으면서 이익률이 높은 부문에 대한 투자 및 先進技術導入 효과가 극히 미미한 부문에 대한 투자는 제한한다는 것이었다. 국무원이 1986년에 발표한 '外國人投資 獎勵 規定'에서도 先進技術企業과 輸出企業만을 우대하고 있어 내수위주의 서비스업종에 대한 투자는 제한할 것임을 간접적으로 암시하였다.

또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1989년 5월에 '當面한 産業政策 要點에 관한 國務院의 決定'에서 直接投資 도입업종을 제조업 위주로 유도하였으며, '外資企業法 實施細則'에서는 국내상업, 무역업, 보험업과 통신사업 분야와 관련된 독자기업 설립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공사업과 교통·운수업, 부동산, 신탁투자, 리스산업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조업위주 外資導入 정책은 中國이 대외개방을 확대함에 따라 약간씩 그 기초가 변하고 있다.

라. 國別 推移

국가별 구성에 있어 두드러진 특징은 홍콩·마카오, 日本, 美國, 대만 기업의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1979-91년간에 이루어진 계약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홍콩·마카오가 325.7억달러로 전체의 62.2%, 美國이 51.4억 달러로 9.8%, 日本이 39.1억달러로 7.5%, 대만이 34.3억 달러로 6.6%를 차지하여, 이들 국가로부터의 투자가 中國 直接投資의 86.1%를 점하고 있다.

홍콩 기업은 沿海開放地域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廣東省을 중심으로 華南經濟圈에 상당수가 투자되고 있다. 업종에 있어서는 輕工業, 纖維, 전자부품 조립 등 노동집약형 업종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 수출지향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표3-9> 對中國 直接投資의 國別 推移(契約 基準)

(단위 : 백만 달러)

	1985	1986	1987	1988	41989	1990	1991	'79-'91
홍콩 · 마카오	4,134 (2,631)	1,449 (1,155)	1,974 (1,758)	3,583 (4,771)	3,244 (4,244)	3,943 (5,001)	7,507 (8,879)	32,570 (31,543)
미 국	1,152 (100)	527 (102)	342 (104)	370 (269)	641 (276)	358 (357)	548 (694)	5,010 (2,000)
일 본	471 (127)	210 (94)	301 (113)	276 (237)	439 (294)	457 (341)	812 (599)	3,910 (1,891)
독 일	20 (7)	43 (6)	133 (11)	47 (22)	149 (19)	46 (13)	558 (24)	1,090 (111)
싱가폴	75 (62)	137 (53)	70 (53)	137 (105)	111 (78)	103 (72)	155 (169)	900 (558)
영 국	44 (8)	43 (8)	25 (12)	42 (21)	32 (19)	119 (23)	132 (36)	730 (132)
캐나다	8 (5)	88 (13)	26 (6)	40 (31)	42 (25)	15 (25)	31 (68)	320 (187)
호 주	14 (8)	32 (8)	45 (10)	17 (20)	84 (27)	17 (29)	44 (74)	340 (181)
대 만	N.A	N.A	N.A	520 (432)	430 (539)	890 (1,103)	1,389 (1,735)	3,430 (3,815)
총 계	5,931 (3,073)	2,834 (1,498)	3,709 (2,233)	5,297 (5,945)	5,600 (5,779)	6,596 (7,273)	11,977 (12,978)	5,234 (42,027)

주 : ( ) 안의 숫자는 건수임.

자료 : 「中國經濟年鑑」, 1991.

1991년 자료는 日本國際貿易促進協會, 「國際貿易」, 1992년 5월 5일.

美國企業은 中國 內需市場을 겨냥하고 있는 투자가 많으며, 대도시 지역과 내륙지역에 대한 투자가 많은 편이다. 기업형태에 있어서는 홍콩기업이 合作企業을 선호하고 있는데 비해 美國企業은 合資企業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업종면에서 석유탐사사업의 비중이 높는데, 이는 석유 메이저들이 전세계에 걸친 석유탐사의 일환으로 1980년대초 中國 근해에 대한 석유탐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日本 기업들은 대체로 中國投資에 신중한 자세를 보여, 초기에는 수익성이 높은 해저유전개발과 호텔 등 서비스 업종에 대한 투자가 대종을 이루었으나, 1988년 이후에는 연해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1980년대 말 이후 한국,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NICs 지역이 임금인상과 통화의 평가절상 등으로 투자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자 勞動集約的인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 대상지역을 中國으로 선회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中國이 완제품에 대한 수입을 강력히 규제함에 따라 투자를 통한 中國市場 진출을 시도하는 것도 그 원인이다. 투자지역은 연해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大連市를 중심으로 遼寧省에 대한 진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반면, 내륙지역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데, 이것은 투자위험에 대한 日本 기업의 보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1988년 이후 廣東省과 福建省을 중심으로 대만 기업의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中國 정부가 대만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1988년에 '臺灣 및 華僑資本에 대한 優待措置'를 발표하였고, 1990년부터 대만 정부가 大陸에 대한 間接投資를 허용하였기 때문이라고할 수 있다. 공식 통계가 없기 때문에 대만의 투자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홍콩에 이어 두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마. 地域別 分布

對中投資를 지역별로 보면 沿海地域의 11개 省·市에 약 90%(투자건수로는 99%)가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3개 經濟特區가 있는 廣東省이 과반수 이상(누계기준)을 점하고 있어 對中投資가 압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沿海地域을 크게 南部(廣東, 福建, 海南), 中部(江蘇, 上海, 浙江), 北部(北京, 天津, 河北, 山東, 遼寧)의 3지역으로 구분할 때 남부지역이 전체 연해지역투자액의

67%(1989년말 현재), 중부지역이 10%, 북부지역이 14%를 각각 점하고 있으며 大連을 중심으로 하는 북부지역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표3-10> 中國의 地域別 外國人 直接投資 現況(契約 基準)

(단위 : 건, 백만 달러)

	1979-87		1988		1989		1990		1991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화남지역	7,280	10,394	4,082	3,088	3,762	3,633	4,451	4,106	6,433	6,841
광둥성	5,679	8,889	2,706	2,242	2,438	2,438	3,042	2,690	4,554	4,905
북건성	1,023	822	813	463	872	903	1,043	1,162	1,219	1,449
해남성	291	299	441	270	375	267	252	129	470	394
광서자치구	287	384	122	113	77	25	114	125	190	93
장강삼각주	638	2,222	618	748	660	637	888	794	2,086	1,484
절강성	153	159	152	113	184	84	294	133	585	317
강소성	194	220	247	302	277	193	393	286	1,138	737
상해시	291	1,843	219	333	199	360	201	375	363	430
발해만지역	720	2,327	537	700	595	404	846	569	2,168	1,323
산둥성	126	336	203	260	240	178	366	233	801	655
북경시	261	1,650	148	143	185	79	241	118	724	286
천진시	230	243	94	110	97	84	129	132	354	191
허북성	103	98	92	187	73	63	110	86	289	191
동북삼성	354	977	346	259	375	371	499	542	926	686
요녕성	212	779	272	192	271	301	371	494	575	540
길림성	45	95	25	9	44	23	52	21	121	39
흑룡강성	97	103	49	58	60	47	76	27	230	107
소 계	8,992	15,920	5,583	4,795	5,392	5,045	6,684	6,011	11,613	10,334
기타 지역	683	1,731	303	269	328	193	589	357	1,293	579
산서성	19	6	20	15	19	12	25	12	53	27
안휘성	54	32	35	11	34	6	53	19	104	37
강서성	66	74	35	18	24	5	54	29	162	56
하남성	78	225	38	23	36	17	50	21	154	127
호북성	78	56	53	78	70	48	99	39	228	115
호남성	99	67	22	14	37	19	45	27	153	50
사천성	73	141	34	25	33	21	134	101	232	123
협서성	110	1,029	13	14	23	31	24	11	54	21
총 계	9,675	17,651	5,886	5,064	5,720	5,238	7,273	6,368	12,906	10,983

주 : 1) 중앙 소속기업의 直接投資 도입을 제외한 것임.

자료 : 1979-87년은 「對外經濟貿易年鑑」, 1988년.

1988-90년은 「對外經濟貿易年鑑」, 各年호.

1991년 자료는 日本國際貿易促進協會, 「國際貿易」, 1992년 5월 5일.

南部地域에 投資가 偏重되고 있는 理由는 과거 對中投資가 香港·마카오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데 기인하며 앞으로도 東南아시아 국가들의 對中投資는 남부지역을 중

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日本, 美國, 유럽국가들의 투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남부지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件當 投資金額에 있어서는, 全國平均이 140만 달러이며 廣東(128만 달러), 福建(89만 달러)은 투자규모가 비교적 적은 편이고 이에 비해 上海(311만 달러), 北京(238만 달러), 遼寧(169만 달러) 등은 平均을 上廻하고 있다.

#### 바. 外資系企業의 寄與度

全社會 固定資產投資總額에 대한 外資利用額 比率이 1985년 3.6%에서 1990년에는 6.3%로 높아지고, 總 財政輸入에 대한 外國借款의 比率도 1985년의 1.6%에서 1987년 이후 5%정도로 높아지는 등 中國內 不足資金의 補充分으로서의 外資 및 外資系 企業의 역할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外資系企業의 생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其他 經濟類型의 工業生産額'이 工業生産總額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높아져 1990년에는 4.8%에 달하였으며, 外資系 企業의 종업원 수는 1990년 말 현재 66만 명으로 총 직공의 0.47%를 차지하였다.

外資系 企業의 수출액은 1985년의 2.7억달러에서 1991년에는 120억 달러로 급속히 증가함으로써 總輸出에서 차지하는 比重도 1.5%에서 16.7%로 높아졌다. 반면, 外資系 企業에 의한 部品, 原材料의 輸入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交易收支 改善效果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外資系企業은 資金, 技術, 經營管理 技法의 導入 외에 輸出市場 開拓, 雇傭 및 地域經濟發展 등 전반적인 면에서 中國經濟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표3-11〉 外資 및 外資系 企業의 寄與度

(단위 : %)

	외자이용액	외국차관	외자기업의공업생산	외자기업의직공수	외자기업의수출
	고정자산 투자액	총재정 수입	공업총생산액	총직공수	총수출
1985	3.6	1.6	1.21	0.04	1.5
1986	4.4	3.4	1.46	0.09	2.6
1987	4.8	4.5	2.02	0.16	3.5
1988	5.7	5.3	2.72	0.22	5.9
1989	6.6	4.9	3.44	0.34	9.0
1990	6.3	5.4	4.38	0.47	12.6
1991	-	4.6	-	-	16.7

자료: 1985-90년은 今井理之, "中國の對外經濟政策の發展と成果". 「アツア經濟」, 1992년 2월호에서 전재.



## 第4章 中國의 技術導入政策

### 第1節 序 論

#### 1. 技術導入의 必要性

中國은 現代化計劃의 一環으로서 海外로부터 技術을 導入해야 할 必要性을 인식해왔다. 그러한 技術은 현재 中國에서 생산되고 있는 製品の 品質을 向上하고 輸出을 目的으로 生産된 商品들이 海外市場에서 원활히 판매될 수 있도록 해주는 技術이 要求되었다.

절박한 必要性에도 불구하고, 中國은 自國의 外貨準備金(Foreign exchange reserves)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지 않고서 新技術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中國은 다른 開發途上國들에게 엄청난 負債와 景氣沈滯를 가져다준 '急成長'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技術導入은 수입을 對替하여 國內市場에서 판매될 수 있거나, 新技術의 海外去來費用(foreign exchange cost)의 均衡을 맞추기 위해 수출 가능한 商品을 생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결정되었다.

中國의 第7次 5個年計劃<sup>1)</sup>은 1990년대에 經濟·社會發展을 지속하기 위하여 要求되는 材料, 技術 그리고 訓練된 要員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核心프로젝트 建設, 기업들의 技術的 轉移와 知的資源의 發展을 강력하게 可視化하는 것으로서 計劃期間동안 主要課業의 하나임이 확인되었다. 프로젝트의 目標은 1990년대에 中國의 主要한 産業製品の 약 40%의 品質이 發展途上國家들의 1970년대 후반 혹은 1980년대 초반수준에 도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最尖端 技術의 새로운 분야를 開拓하고 應用 및 基礎研究能力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노력이 기울여질 것이다.

海外貿易이 要求될때, 中國의 建設프로젝트에 대한 優先權은 에너지, 運送, 通信과 原料 및 半加工材料, 그리고 發電에 重點을 두는 港灣施設, 石油産業, 그리고 機械工業과 電子産業의 技術的 轉移같은 領域에 대해 주어질 것이다. 2次的 優先權은 外貨를 벌어들이거나 輸入對替을 誘發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外國技術을 도입함에 있어서, 優先權은 現存하는 産業을 구조적으로 變換시킬 수 있는 部門에 주어

1) 1986년 4월 12일에 인가받았음.

질 것이다.

對外經濟關係貿易部(the Foreign Economic Relation Trade)는 1985년에 美貨 29억66백만달러 상당의 기술도입을 포함하는 665件的 契約을 承認하였다. 契約의 最高件數는 일본과의 契約에서 이루어졌으며(174건) 덧붙여 서독과의 契約은 최고의 액수를 기록하였다(7억9천만 달러). 中國은 技術導入을 持續할 것을 公言하고 있지만, 導入된 技術이 外貨獲得의 純粹源泉이 될 수 있고, 政府에 의해 세워진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음을 보증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 2. 提供者의 考慮事項

中國은 대략 세계인구의 1/4을 포함하며 先例가 없는 經濟成長을 구가하고 있다. 게다가 中國은 海外去來先들이 自國市場에 진출하기를 원한다는 것에 결코 놀라지 않는다. 技術移轉을 隋伴하는 供給者들은 純粹하게 財政的인 展望에 덧붙여 두가지 重要한 關心領域을 가지게 될 것이다:

- (1) 技術이 提供받은 사람에 의해서 合意된 目的을 위하여 唯一하게 使用될 것을 保障한다는 차원에서 中國側 當事者(Chinese entity)에게 轉移된 技術의 保護.
- (2) 특히 中國으로 부터 輸出될 商品에 한해서 技術提供者의 商標로 생산되어야만 하는 製品의 品質.

輸出業者의 첫번째 考慮事項은 中國에 의해 검토되어 왔으며 그 결과로 최근 몇년간에 광범위한 法律이 中國으로 도입된 기술들을 保護하기 위해서 채택되고 있다. 中國은 産業財産權의 보호를 위한 파리총회의 구성원이 되었고 또한 投資의 相互保護와 促進에 관계된 多數의 雙務協定에 署名하였다. 2)

## 3. 現代的인 技術의 利用

中國의 當然한 關心事는 導入된 技術이 最近의 것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關聯法律은

---

2) 1986년 5월까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이태리, 쿠웨이트,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루마니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스웨덴, 태국, 영국 및 서독과의 협정이 체결되었다.

서방시장에서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낡은 기술의 덤핑도입의 방지를 겨냥하고 있다. 이것은 특별히 민감한 문제이고, 源泉技術에 대한 改選과 改良의 供給을 포함하는 中國企業과의 合作을 長期間의 合作으로 고려하는 외국 수출업자들에게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中國의 現在 發展狀態와 中國의 下部構造가 무시되어서는 안되며, 따라서 特定分野에서는 尖端技術이 環境與件上 適合하지 않을 수도 있다.

## 第 2 節 技術移轉의 方法

中國에 대한 技術移轉을 고려할 때 확정해야 하는 優先的인 問題들 중의 하나는 中國側과 맺으려고 하는 關係의 特質과 條件이다. 前節에서 언급했듯이 中國政府는 技術이 最新의 것이고, 中國이 어떤 未來의 向上이나 改選의 利益全部를 專有할수 있는 상태로 技術이 持續되는 것을 保障하기를 원한다. 技術移轉에 관련된 中國의 法律은 技術移轉 方法을 좌우할 것이다. 모든 契約들은 “對外經濟契約法”(Foreign Economic Contract Law)<sup>3)</sup>에 規定받게 될 것이고 技術移轉의 대부분은 그에 수반되어 공포된 “技術取得契約의 施行에 관한 規則”과 “節次”에 規定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技術이 合作投資에 대한 참여자의 資本持分으로서 제공되는 경우에, 그러한 移轉은 “海外合作投資에 관한 法律”에 의해 적용될 것이다. 詳細한 法律要件은 第3節에서 檢討된다.

과거 2년에 걸친 技術移轉에 관한 왕성한 활동은 이미 많은 문제점들을 초래했었다. 그중 우선적인 것은 몇몇 경우에 不適當한 技術이 導入되었음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다른 문제점은 中國內 여러분야의 主體(entity)들이 相互協議없이 비슷한 技術을 도입해왔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서, 이제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유사한 計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計劃全般에 걸쳐서 더 커다란 中央統制가 실행되고 있다. 技術이 부분적으로 重複되어 도입된 것의 대표적인 예는 컬러TV세트와 관련된 것이다. 즉, 100개 이상의 다른 컬러TV생산라인들이 契約되었다.<sup>4)</sup> 이에 대한 調整節次의 一環으로서 더 公式的인 監督體系가 프로젝트를 위하여 도입될 것이며, 中國은 한해에 120,000 - 150,000개의 부품供給者를 찾기 위하여 비디오 레코더 제작기술과 장비의 일괄 수입을 위한 조건을 검

3) 1985년 3월 21일에 制定되고 同年 7월1일 發效됨.

4) South China Morning Post, 26 May 1986.

토하기 위해 30개 외국기업을 초청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sup>5)</sup> 移轉方法을 어느것으로 채택하든지, 수출업자는 集約的이고 때로는 높은 수준의 교섭이 요구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中國은 生産水準을 向上시키기 위하여 標準品質以下의 상품들이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品質管理에 대한 책임을 확립하는 新規則을 도입해왔다. 더군다나 中國의 外換을 保存하기 위해서 技術供給者는 때때로 新技術使用으로 생산된 製品을 포함하여 對應貿易 혹은 求償貿易의 방법에 의한 支拂을 受諾하도록 요구받을 수도 있다.

### 1. 無條件 販賣(Outright sale)

外國供給業者는 聯關技術의 無條件販賣를 選好할 수도 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방법은 기술을 갱신하기 위해(週期的인 所要經費를 초래하는) 연속적인 책임을 회피할 것이다. 그러나 中國은 외국인 參與者와 관련된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相互協力'의 지속을 고려하고, 이런 관점으로부터 수입된 기술이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고 보존되어야 한다고 강조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無條件販賣는 권장되지 않고 長期間의 관계가 추구된다. 아마도 無條件販賣는 連續的인 製造工程 또는 販賣計劃보다는 建設事業과 같은 하나의 特殊한 프로젝트나 産業發展의 한 特殊한 段階를 위하여 要求되는 技術에 적절할 것이다.

### 2. 諮問契約(Consultancy agreement)

移轉된 技術이 專門技術的인 노하우性格의 技術인 境遇, 그것은 아마도 相談契約을 맺으려는 參與者들을 위해서는 더 適當한 것이 될 것이다. 相談用役이 오랜기간에 걸쳐 제공될 수 있는 경우에, 中國政府는 純粹諮問契約보다는 合作投資에의 참여를 장려할 것이다. 그러한 '獎勵'는 기술의 無條件販賣나 諮問契約 둘 중의 하나가 외국인의 관점에서 볼때 더 만족스러운 것이 될 수 있는 농업프로젝트에 이용되었다. 諮問契約은 특히 다수의 技術的 專門家가 요구되는 石油産業에 관련되어 활용되어 왔다. 諮問契約은 흔히 合作投資契約과 결합된다.

---

5) China Economic News, 26 May 1986.

### 3. 라이선싱契約(Licensing agreement)

라이선싱契約은 合作投資에 관련하거나 分離契約으로서 이용될수도 있다. 두 경우중 中國側 參與者는 생산된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받아들여질 것을 보증받기 위해서 最新의 特許技術을 요구할 것이다. 中國에서 파악된 생산잇점의 하나는 상대적으로 낮은 單位 勞動力 價格이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수출을 위해서 상품을 값싸게 생산하려는 희망에서 中國企業들과 契約關係를 맺으려는 상당한 動機要因이 있다.

技術提供者의 다른 시장을 보호하기위해서 수출에 부과되는 制限들은 第3節에서 언급된 技術移轉規則에 의거하여 禁止된다. 그러나, 中國은 이제 特許權者가 特許權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거나 支社에 대해 獨占的인 特許를 부여한 國家와 地域들에 관해서는 輸出權이 中國側 라이선시에게 附與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sup>6)</sup> 一般規則으로서 수출에 관한 어떤 다른 制限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게다가 라이선싱契約이 종결되기 전에는 特許權者가 그 자신의 시장이 免許契約에 의해 損傷되지 않는다는 것을 保證받기 위해 이미 製品이 特許를 받거나 市場에 出荷된 나라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더구나 製品이 特許權者의 品質水準에 이를때까지는 特許權者의 商標로 販賣되지 않는다는 것을 保證할 필요가 있다.

### 4. 合作投資에 대한 寄與로서의 技術移轉

合作投資 參與者들에게 合作投資에 대한 資本寄與의 一環으로서 産業財産權과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中國의 “合作投資法(the Joint Venture Law)”에 따르면 投資一環으로서 外國參與者에 의해 제공된 技術이나 裝備는 進歩된 것이어야 하고 中國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sup>7)</sup> 中國政府는 合作投資의 衡平을 위해서 資本持分으로서의 기술을 承認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만일 기술이 主要지분이 된다면, 合作投資의 形평을 위해서 일정한 양의 現금을 제공해야하고 그렇게 되면 合作投資를 위해 合作投資 파트너

6) Beijing Review, 10 March 1986.

7) 合作投資法(Joint Venture Law) 第5條 및 合作投資施行規則(Joint Venture Regulation) 第44條.

와 라이선싱契約이나 諮問契約關係를 맺을 필요가 있게되기 때문이다.

1986년 1월부터 發效되는 合作投資法에 의하면, 만일 외국상대방의 견지에서 合作投資가 先進的인 기술을 제공하고 國內市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한다면 合作投資의 期限이 50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주목해야만 한다. 또한 특별한 조건하에서라면 50년 이상의 기간동안 合作投資協定을 맺는것도 가능하다.

技術移轉의 방법중 그 어떤 것이 채택되더라도, 供給者는 技術供給에 부가하여, 中國外部로 製品을 出荷할 責任이 있다는것과, 中國外部의 시장을 발전시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것은 現物로 特許手數料를 지불하는 것에 의해서나 혹은 受取者에 의해서 이루어진 純賣出額을 참조하여 特許手數料를 계산하는 것에 의해서든 달성될 것이다. 對外販賣는 外國파트너에게 特許權使用料를 지불하기 위해 中國側이 外換을 사용할 수 있도록 保證하기 위해 특히 중요한 것이다.

### 第3節 中國의 技術移轉에 관한 法律

前節에서 지적한것처럼, 中國의 技術移轉에 관련된 다음 3가지 法規 즉 “對外經濟契約法”, “技術獲得契約의 施行에 관한 規則”과 “對外合作投資法”은 技術移轉協定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이 法規의 地方別 施行規則들이 14個 海岸都市와 海南島를 비롯하여 經濟特區들에 채택되었다.

#### 1. 對外經濟契約法

##### 가. 法規의 概要

“對外經濟契約法”(The Foreign Contract Law -이하 “FECL”로 표기)은 1985년 6월 1일에 시행되었다. FECL 은 中國人 當事者와 海外 當事者사이에(다른 國際貿易契約보다) 모든 經濟的 契約에 적용하는 것을 나타낸다.<sup>8)</sup> 이 법률은 中國人들이 協商에서 매번 사용하는 用語들을 反復해서 強調하고 있다. 즉 契約은 “對等과 相互互惠의 原則과

8) 中國의 “對外經濟契約法” 第2條 참조.

對話를 통하여 合意에 도달하는 것”에 基礎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나. 契約形成에 관한 法律條項

契約은 書面으로 혹은 書類에 의해 立證되어야 하며, 그것은 署名이나 다른 방법으로 認定되어질 때 締結된다. 그러나 中國政府의 承認이 요구되어지는 경우에 契約은 단지 承認되었을 때만 拘束力이 있게 된다.<sup>9)</sup> 承認과정은 언제나 형식적인 절차인 것은 아니며, 몇몇 경우에 承認節次는 再交渉의 機會로서 中國側에 의해 이용되어 왔다. 그것은 外國側 當事者가 아마도 만일 契約이 특정한 날짜에 承認되지 않는다면 효력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요구를 하기위해 필요할 것이다. 덧붙여 協약하에 있는 當事者들의 책임은 말하자면, 외국인 관계자에게 그런 承認을 통보할 수 있도록 契約이 承認된 30日 後에 시작될 수 있다.

合意되어진 특별한 條項이 잘못되어 있어 어느 한쪽이 비록 그 條項과 契約의 나머지 條項들을 分離한다 하더라도 法律이나 中國의 ‘公共利益’에 위배되는 契約은 피해야만 한다. 잘못된 表現과 規定에 의해 초래되는 契約은 實效성이 없으며 契約의 무효에 책임이 있는 當事者는 다른 當事者에게 어쩔 수 없이 補償해야 한다.<sup>10)</sup>

어떤 契約도 다음 情報를 包含해야만 한다:

- ① 當事者의 姓名, 國籍, 住所. 이는 中國人 會社와 署名人의 資格과 權限을 確實히 하는데 중요하다.
- ② 契約 署名(締結)日時와 場所,
- ③ 關聯된 契約類型과 契約의 主要內容,
- ④ 契約에 의해 保護되어야 하는 對象의 技術的 條件, 品質, 規格, 明細와 數量,
- ⑤ 契約遂行의 期間, 場所, 方法,
- ⑥ 價格, 그리고 價格과 費用이 算定되는 時期와 方法,
- ⑦ 契約의 讓渡可能性(assignability),
- ⑧ 補償을 包含하는 契約不履行의 責任,
- ⑨ 紛爭解決調整,
- ⑩ 使用되는 言語와 拘束力.

9) 中國의 “對外經濟契約法” 第7條 參照.

10) 對外經濟契約法 第11條 參照.

一般的인 規則으로서, 契約은 비록 技術契約의 경우에는 그러한 요구가 없긴 하지만 中國語 및 外國語로 이루어져야 한다. 中國側 當事者는 解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中國語로 작성된 原文이 優勢할 것이라고 主張할 수 있지만, 兩 言語로 쓰여진 原文이 '相互根據있는' 것이 되도록 規定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그 項目이 특별히 기술적인 것이 라면, 外國語部門이 優勢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외에도, 契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規定해야만 한다.

- ① 契約遂行中에 兩 當事者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는 危險, 그리고 필요하면 保險契約, 11)
- ② 長期契約을 위한 期間, 延長期間, 延長 혹은 契約終結의 方法,
- ③ 當事者들 혹은 第3者에 의한 擔保가 契約과 관련하여 提供되어야만 하는 範圍,
- ④ 契約不履行으로 입은 損失을 確定하는 方法,
- ⑤ 支給金の 延滯에 대해 支拂해야 하는 利率,
- ⑥ 不可抗力의인 事件, 예기치않은 自然災害인 한에 있어서는 紛爭의 原因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 不可抗力의 定義에 中國에서 발생하는 中國政府措處나 罷業과 관련된 어떤 交渉도 包含되기도 한다.

#### (1) 契約期間

만일 한 當事者가 契約을 履行하는데 실패하면 다른 當事者는 履行을 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 當事者가 정당한 이유없이 중단한다면, 그는 契約違反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履行當事者는 違反한 當事者에 대해 賠償金を 청구할 수 있다. 많은 司法裁判처럼, 賠償金請求는 실제로 입은 손실에 제한되는데, 그런 손실은 契約을 체결할 時點에서 合理的으로 豫測되어야만 한다. 當事者들은 그들의 損失을 輕減할 책임이 있고 입은 損害를 確證하는 基準을 契約속에 삽입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實際로 發生된 損失이 契約에서 規定된 양보다 더 높거나 더 낮으면, 支拂해야 하는 賠償額은 調整에 一任하거나 再調査를 위해 民事法院에 一任할 수 있다. 12)

11) 中國의 “對外經濟契約法” 第13條 參照.

12) 中國의 “對外經濟契約法” 第20條 參照.



不可抗力의 事態가 發生하면, 當事者는 그런 사태가 지속될 동안에 不可抗力의인 이유에 의해 영향을 받아 어쩔 수 없이 義務를 수행할 수 없지만 損失을 挽回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適切한 證據를 가지고 다른 當事者에게 通報해야만 한다.

當事者의 權利와 義務의 附與는 다른 當事者의 同意를 條件으로 하여 承認된다. 契約 속에 그런 동의를 規定하는 것에는 어떤 반대이유도 없다. 그러나, 契約이 省政府에 의한 承認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當局은 契約에 달리 規定되지 않는 한 權利와 義務의 부여를 承認해야만 한다.<sup>13)</sup>

## (2) 契約變更과 終了

當事者들 사이의 동의에 의거하여 契約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런 變更은 書類로 作成되어야 한다. 주요한 변경은 최초로 契約을 承認한 政府의 허가를 필요로 할 것이고 어떤 변경도 契約에 관한 한 先行하는 要求에 影響을 미치지 않는다.

한 當事者는 다음과 같은 경우 契約 또는 契約의 一部分을 終結지을 수 있다. 즉,

- ① 다른 當事者가 契約의 목표달성을 심각하게 妨害할 目的으로 深刻한 違反을 저지르는 경우,
- ② 다른 當事者가 規定된 時間이나, 그로부터 일정한 시간안에 義務를 履行하지 못한 경우,
- ③ 不可抗力이 契約上의 모든 義務遂行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 ④ 終結條項이 契約條件속에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그런 條項들은 보통 破産, 實行目標, 品質 및 數量管理와 그와 유사한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다.

위에서 言及된 一方的인 終結에 덧붙여, 契約은 그것이 완전히 수행될 때, 仲裁者나 民事法院이 그렇게 결정할 때, 혹은 當事者들이 그것에 동의할 때 終結될 수 있다. 終結通報는 書類로 이루어져야 하고 關聯許可當局에 의해 파악되어야만 한다.<sup>14)</sup>

契約의 終結은 어떤 先行하는 請求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紛爭仲裁, 決算과 清算條項은 終結에서 除外된다.

13) 中國의 “對外經濟契約法” 第27條 參照.

14) 中國의 “對外經濟契約法” 第33條 參照.

### (3) 上位法과 紛爭仲裁

FECL의 第5條는 上位法에 관한 혼란스러운 規定을 담고 있다. 同 條項은 契約當事者가 契約紛爭을 처리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規定한다. 이것은 外國法의 선택이 오직 '契約紛爭의 取扱'과 關聯해서만 許容할 수 있다는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래에 언급된 特別契約들을 除外하고 當事者들이 契約의 上位法으로서 外國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 中國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에 의하면 FECL이 적용하는 契約上位法으로서 外國법을 선택하는 것이 中國法律下에서 적절한 법률선택이라고 한다. 中國側과의 協商에서 만일 外國法이 容認된다면 外國企業家들은 契約속에 있는 法條項이 第5條의 字句에 따라야 한다는 요구와 흔히 마주치게 되지만 또다른 선택은 '이 契約하에 發生하는 紛爭의 處理에 英國法을 適用할 수 있다'라는 넌센스를 낳게 된다.

中國의 법률은 中國人 및 外國人の 合作投資, 合同投資契約들과 中國안에서 수행되는 天然資源의 外國合同探查와 開發을 위한 契約의 경우에 義務의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만일 기술이 合作投資를 위하여 혹은 合作投資計劃의 일환으로서 移轉된다면 (合作投資內의 資本持分의 方法以外에), 技術契約이 非中國法에 의해 규제되는 경우에 技術契約과 合作投資契約를 명백하게 분리하여 다루어야 한다.

만일 契約에 法律의 明白한 選擇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第5條는 契約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의 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規定한다.

不明確한 領域은 外國法의 明示된 選擇이 이루어졌을때, 혹은 法律條項의 선택의 여지가 없고 外國법이 적용되었을때 契約에 대한 當事者들의 책임과 義務를 지배하는 FECL의 規定에 대한 限界이다. 이 문제는 베이징에서 中國辯護士들과 外國法學者들에 의해 논의되어졌으며, 다른 견해들도 나타났다. 그 점이 불명확하게 남아있긴 하지만 보다 나은 견해는 外國法은 그런 問題들을 調整해야 한다는 것이다.<sup>15)</sup> 그러나 만일 紛爭이 中國內에서 民事法院으로 가게 되면, 外國法은 FECL의 條項에 이익이 되도록 棄却될 多少의 危險이 따르게 된다. 예를 들어 책임의 전후관계속에서 이러한 결과로서 발생하는 어떤 해로운 결과의 위험은 契約違反의 結果를 詳細하게 判讀함으로써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실제로 발생한 손실이 契約下에 規定된 양보

15) 契約當事者들이 契約紛爭을 다루는데 適用될 法律을 選擇할 수 있다.

다 더 높거나 낮을때는, 補償額은 仲裁人이나 再調査를 위해 民事法院에 회부될 수 있다.

第5條는 또한 中國法이 契約이 적용할 그 점에 대해서 明記되어 있지 않으며 보통 國際的인 慣例가 適用될 수 있고 中國法과 國際的인 條約이 一致하지 않는 경우에는 國際的인 條約을 適用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또한 FECL은 紛爭解決에 관한 條項을 담고 있다. 즉 경험상으로 보면 當事者들이 中國에서 혹은 中國의 외부에서 仲裁者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만일 中國側이 中國 外部의 仲裁者를 허용한다면 스톡홀름은 전통적으로 기준에 맞는 장소이며 더욱 최근에는 (홍콩에서 中國-英國共同宣言의 調印이래로) 홍콩이 그렇게 되고 있다. 이들 두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當事者들은 런던, 파리 혹은 어떤 다른 仲裁場所에 동의할 수 있다. 그리고 契約안에 仲裁條項이 없다면 紛爭은 아마 民事法院으로 移送되어 當事者들이 의견을 진술하게 되는데, 契約은 外國法庭의 裁判權에 관한 仲裁付託을 포함할 수 있다.

中國에서는 友好的인 對話의 過程을 통해서 一致에 到達하고 紛爭을 해결하는 慣習이 있다. FECL의 紛爭解決에 관한 章은 契約上의 紛爭이 發生했을때 當事者들이 대화나 第三者 仲裁를 통해 紛爭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해야만 한다는 취지의 문장으로 시작한다. 中國企業들과의 契約書에는 일정하게 이런 효력에 대한 문장이 담겨있지만, 兩者는 友好的인 論議過程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時間制限(이를테면 30日)을 포함하도록 勸告된다. 中國에서의 仲裁는 '海外貿易增進을 위한 中國議會의 仲裁委員會'(이하 CCPIT)에 의해 規定된다. 當事者들은 仲裁審査가 確定的이 될때 契約에 동의할 수 있다. CCPIT의 仲裁委員會는 또한 그들이 본격적인 仲裁나 法院審理에 들어가기 전에 仲裁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여 仲裁便宜를 기꺼이 제공한다.

## 2. 技術取得施行規則과 節次

"技術取得契約의 施行에 관한 規則"은 1985년 5월 24일에 施行되었고, '技術輸入契約의 審査와 承認을 위한 節次'는 1985년 9월 18일에 施行되었다. 이 법률은 合作投資에 대한 資本寄與로서의 技術移轉에 적용할 수 없다.

## 가. 技術移轉

“技術導入規則”은 다음 方法에 의하여 技術導入에 適用된다.

- (1) 特許나 다른 産業財産權의 讓渡와 許可,
- (2) 圖面, 技術的 資料, 技術 明細書, 生産工程, 生産方法, 設計圖, 品質管理과 經營技術을 包含하는 技術的 노하우의 讓渡와 許可,
- (3) 中國에서 노동하는 외국인에 관한 契約을 제외하고, 妥當性調査, 工學的設計, 專門的 팀에 관한 項目, 製品 設計, 品質管理과 經營을 包含하는 技術的 便宜를 위한 契約,
- (4) 半組立 및 完全組立作業과 材料 및 見本の 供給過程을 제외하고, 産業財産權이나 技術的 노하우, 또는 認許可를 포함하는 協同生産을 위한 契約,
- (5) 全體設備의 供給을 위한 契約, 예를들어 移轉하려고 하는 플랜트, 공장 혹은 생산라인, 기술적 편의의 제공에 덧붙여 허가된 산업재산권과 기술적 노하우, 그리고
- (6) 定規販賣와 애프터서비스 그리고 操作과 補修를 위한 小冊子를 제외하고, 산업재산권과 노하우의 移轉과 許可와 관련된 機械나 商品의 구입을 위한 어떤 다른 契約.<sup>16)</sup>

導入技術은 進步的이고 適切한 것이라는, 반복적인 주제와 일치되어 적어도 다음 基準의 하나에 附屬해야만 한다.

- (1) 發展可能性이 있으며 새로운 生産品을 생산할 수 있거나 현존하는 제품의 品質과 性能을 改選할 수 있으며, 生産單價를 줄이고 에너지와 原料消費를 줄일 수 있다.
- (2) 지역적인 資源의 最大活用을 促進하고 環境基準을 向上시켜야 한다.
- (3) 製品의 輸出과 外貨獲得을 增加시킬 수 있다.
- (4) 生産安全과 經營을 向上시킬 수 있다. 혹은
- (5) 技術的 또는 科學的 노하우의 水準提高에 寄與할 수 있다.

---

16) 技術輸入規則(TIR)第2條 및 技術輸入契約의 審査와 承認을 위한 節次 第2條 參照.

中國産業의 대부분이 1940년대와 1950년대의 러시아모델에 기초하고 있는 단계에서 中國産業의 에너지와 燃料效率를 增加시켜야 하는 많은 領域이 있다. 에너지보존은 中國의 발전시스템이 차지하는 무시할 수 없는 부담과, 산업성장에 필요한 다수의 발전소와 특별한 관련이 있다.

#### 나. 技術移轉契約

契約은 “對外經濟契約法”과, 特許와 商品에 관계되는 법을 포함하여 다른 關聯規則에 부합해야 한다. 즉 외국법이 契約解析을 위하여 선택된다 할지라도, 契約의 형성은 中國法律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技術移轉契約은 서류로 작성되어야만 하고 技術의 趣旨, 展望, 種類가 詳述되어야 하며, 特許와 商標는 성취되어야 하는 技術的 目標, 거쳐야 할 段階, 그러한 달성을 위하여 許容되는 時間, 그리고 供給者의 補修의 支拂量과 支拂方法을 포괄한다.

기술供給者는 技術의 適法한 所有者라는 根據를 요구받게 되며 그러한 기술은 완벽하고 정확하고 효과적이며 契約에서 상술된 기술적 목표를 충족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는 供給者가 기술을 공급하려고 시도하면서 단지 한정된 근거만을 제시하는 技術移轉契約에서 가끔 발견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 기술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中國에서 활용가능한 勞動力, 土地, 에너지 供給과 原料의 質에 左右될 것이다. 이러한 조건속에서 妥當性調查와 다른 경우 供給者는 기술의 가능성을 상술할 때 비교적 신중해야만 한다. 게다가 勞動力, 土地, 原料 등의 最少基準은 誤解와 紛爭을 막기 위하여 供給者에 의해 상술되어야만 한다.

技術導入者는 約束한 期間동안에 同一한 技術이 公開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공급된 기술속에 포함된 技術的 機密을 지켜야 한다. 機密維持期間이 契約의 終了이후까지 延長되는 것에는 난점이 없고, 많은 조건속에서 그런 條項은 바람직하다. 供給者는 또한 供給者와 기밀유지를 맺은 사람만 技術을 使用할 수 있다고 확실하게 보증을 해야 한다. 機密維持는 특히 交渉段階에서 中國側 當事者가 供給者의 공장을 때때로 방문하고 기술과 관련된 모든 基礎環境에 대한 文獻的 調查를 요청할 때 매우 미묘한 문제이다. 그것은 많은 供給者들이 전혀 혹은 공식적인 契約이 체결되기 移轉에 그런 情報를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것으로 평가될 것이고, 그 결과 計劃이 그 단계에서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

고 확실하게 보증되어야 한다.

技術契約의 期間은 關聯許可當局의 承認을 제외하고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期間은 導入者가 技術을 消化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길어야만 한다. 契約期間은 技術을 위한 適當한 元金回收期間임을 確證할 뿐만 아니라 導入者가 보통 期間滿了後에 技術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중요하다. 期間滿了까지는 中國側 當事者가 特許와 商標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노하우의 존재는 원래의 供給者에 대한 支拂없이도 中國側이 完成品을 生産할 수 있도록 한다. 供給者는 또한 가능한 한 오랫동안 契約이 계속되도록 契約을 締結할 수 있고, 그 答禮로 技術更新義務의 範圍를 規定할 수 있다.

契約上の 어떠한 制限條項도 關聯許可機關의 許可없이 承認되지 않는다. 그러한 制限條項은 다음과 같다.

(1) 不必要한 技術, 技術的 便宜, 原料, 裝備와 製品을 구입하도록 導入者에게 요구하는 것과 같이 도입되는 技術과 關係가 없는 附加的 條件을 導入者가 받아들일도록 요구하는 項目.

(2) 다른 供給者로부터 原料, 部品 혹은 附屬品과 裝備를 購入하려는 導入者의 選擇의 自由를 制限하는 項目.

技術供給은 分割販賣로서 간주되어야만 하며, 그 결과로서 導入者는 技術供給者로부터 다른 공급을 얻을 수 없다. 또한 生産의 質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료와 다른 項目의 詳細한 事項은 契約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3) 導入者에 의해 導入된 技術의 改善과 向上을 制限하는 項目.

만일 導入者가 技術을 사용하여 產品을 生産하는 方法을 개선한다면, 그것은 공급된 技術속에 詳述된 過程을 정확히 따라야 한다고 義務적인 條項을 規定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改善'이 다른 產品을 낳게 될 것인지는 契約에 規定된 製品의 詳述된 明細書에 좌우된다.

(4) 導入者가 類似하거나 競爭的인 技術을 다른 供給者에 의해 取得하는 것을 制限하는 條項.

이것은 특히 特許權使用料 支給과 關連하여 만일 導入者가 產品이 다른 사람의 技術을 사용하여 生産되었다고 주장하게 되면 곤란하게 될 수 있다.

(5) 非互惠的인 交換이 技術向上을 規定하는 項目.

中國側에 의해 이루어진 向上은 供給者에게 속하게 되고 그 供給者는 中國人 기업측에게 그런 向上을 알리는 것을 強制받지 않는다는 條項이 거절되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새로운 製品과 改善을 區別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契約滿了後에 技術使用權을 주고 改善된 狀態는 주의깊게 文書化되어야만 한다.

- (6) 導入者에 의해 導入된 技術로 製造되는 製品의 數量, 種類와 販賣價格을 制限하는 條項.

商標를 保護하기 위해 商標를 使用하는 商品의 最小基準을 확립해야만 한다. 만일 特許權使用료가 販賣收益에 基礎한다면 販賣價格을 計算하는 方式 혹은 다른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 (7) 導入者의 販賣經路와 輸出市場을 非合理的으로 制限하는 條項.

第2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制限은 제공자가 特許權을 적절하게 갖거나 子會社에 대해 獨占的인 免許를 附與하는 나라들의 견지에서 허용될 것이다. 中國은 일반적으로 무역을 발전시켜 오지 않았기 때문에, 技術供給者는 특히 特許權使用료가 여러해에 걸쳐 지불할 수 있다면, 中國外部에서의 製品의 初期販賣를 기꺼이 책임지도록 勸獎될 것이다.

- (8) 契約終結後에 導入者에 의한 輸入된 技術의 使用禁止條項.

契約이 初期에 不履行으로 인하여 終結된다면 禁止를 賦課하는 制限條項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한 條項들은 中國側 當事者들에게 받아들여 지지는 않을 것이다. 技術의 本性에 따라, 契約滿了後의 技術使用은 민감한 문제일 것이다. 機密保障의 條項이 契約의 終結以後 期間에도 적용된다면, 契約期間 이후에 다른 中國側 當事者에 의해 技術이 사용될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 (9) 문제가 되지않고 더 이상 효과가 없는 特許權에 관한 책임을 導入者가 수행하거나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條項.

만일 特許가 許可된다면, 特許가 技術移轉契約 당시에 中國에서 등록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特許登錄은 심지어 導入者가 이미 적합한 技術의 전부를 받아들인 그런 조건에서처럼 特許가 取消된다해도 特許使用料는 保留되지 않을 것이라고 確證하기 위하여 契約의 조건이 될 수도 있다.

供給者에게 지불되어야 하는 補償과 支拂時間 및 方法은 詳細한 交渉이 要求된다. 實

質的인 先行投資의 費用은 만일 契約이 妥當한 期間동안 商標의 使用을 위해 有效하다면 承認되지 않을수도 있고 혹은 다른 販賣商標를 얻기 힘들수도 있다. 덧붙여, 源泉課稅徵收額을 補充하기 위해 純利益을 控除前의 額數에 合算하는 것은 아마도 거절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供給者는 有效한 外換이 費用을 支拂하는데 有用하다는 것을 保證하기 위해 製品販賣를 위한 責任을 收用해야만 한다.

導入者가 어떤 條項의 先許可를 기대하여 協商過程동안에 關聯許可當局과 협의할 수 있다. 그러나 公式的이고 拘束力있는 許可가 그런 條件에서 주어질 것인지 어떨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여하튼, 일정한 課稅特典의 허가는 契約完成前에 얻어질 수 있거나 혹은 契約이 有效하게 되기위한 條件이 될 수 있다.

#### 다. 契約의 承認

技術導入者는 契約日字後 30日以內에 '對外經濟關係貿易部' 혹은 委任된 機關으로부터 허가를 받기 위해 申請書를 제출해야 한다.<sup>17)</sup> 申請書는 契約書寫本과 中國語解析, 當事者의 法律上 地位의 證明書, 그리고 許可當局에 의해 필요한 것으로 看做되는 문서들을 첨부해야 한다. 비록 技術契約이 中國語로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契約書는 許可目的을 위하여 中國語로 翻譯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교적 간단한 形式과 立案樣式이 勸告된다. 그러나, 技術과 生産品의 內譯이 특별히 기술적인 경우에는 비록 文書가 中國語가 아닌 言語로 署名될 지라도, 그것은 外國版이 優勢하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불과하다.

접수된 契約에 대하여, 許可當局은 契約이 妥當性調査의 關聯法律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主要項目이 합리적인지를 고려해야만 한다. 따라서 外國側 當事者는 체결된 契約의 許可當局에의 提出이 協商過程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契約은 申請書接受 60日 以內에 허용되거나 거절되어야 한다. 만일 기간내에 아무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허용된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許可機關이 許可證明書を 發給하지 않는다면 銀行擔保(保證), 關稅免除 등을 적용할때 곤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許可當局과 協議하여 許可證明書を 얻는 것이 통상적이다. 契約의 修正과 再開는 同一한 許可를 요구한다.

---

17) 技術輸入規則(TIR) 第4條 參照.



## 라. 契約의 開始

技術移轉契約은 許可 혹은 許可된 것으로 看做된 날짜로부터 施行된다. 그러나 許可로 看做되는 것에서 문제가 생겨날 수 있으므로 契約이 承認에 의해 拘束力있게 됨에도 불구하고 當事者들이 許可證明書가 發行되었을 때에만 오직 그들의 義務를 遂行하도록 강제될 수 있다는 것을 契約書에 規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特許와 商標登錄, 課稅免除, 機密維持履行과 COCOM承認을 包含하는 다른 條件들도 規定하는 것이 좋다. 供給者는 契約이 모든 관점에서 무조건으로 되지 않는 한 문제의 기술을 개방할 수 없다.

### 3. 合作投資 技術移轉

‘技術導入契約의 審査와 承認을 위한 節次’ 중의 第3條는 合作投資에서 持分寄與로 獲得한 技術이 “中國인과 外國人 投資를 다루는 合作投資에 대한 法”에 의해서 規定되고 履行規則이 그에 따라서 公布될 것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다른 技術導入은 “技術導入規則”에 의해 拘束을 받는다.

中國의 “合作投資法”은 1979년 7월 8일에 施行되었고 “合作投資規則”은 1983년 9월 20일에 發效되었다. 合作投資를 위해 兩側은 産業財産權을 제공할 수 있지만 持分投資로서 外國參與者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技術 혹은 裝備는 先進的인 것이어야 한다. 만일 時代에 뒤떨어진 裝備나 技術의 國際的인 條項을 무시한 속임수에 의해서 손실이 발생한다면 海外參與者는 損失을 補償하는 責任을 하여야한다.<sup>18)</sup>

동반자의 資本持分으로서 제공된 技術의 價値는 ‘公正과 合理性의 原則에 附合하여’ 論議되고 一致되어야 하며 第3者에 의해 判定될 수 있다.<sup>19)</sup>

비록 보다 덜 廣大하다 하더라도 技術은 “技術導入規則”과 명백히 비교되는 어떤 資格에 합치해야 한다. 기술은 타당하고 진보적이어야 하고 제품이 국내적으로 豊富한 社會經濟的 成果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하며, 海外市場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또한 기술은

18) 中國의 “合作投資法” 第5條 參照.

19) 中國의 “合作投資施行規則” 第25條 參照.

- (1) 中國의 합리적인 필요성 혹은 輸出에 適合한 새로운 製品의 生産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 (2) 現存하는 製品의 機能과 品質面에서 顯著한 改善과 生産性向上을 가져와야 한다.
- (3) 原料, 燃料 혹은 電力의 顯著한 節約을 가져와야 한다.

그러나 環境保護는 이들 規則에 의해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될 수 있다.

한편 特許證明書의 寫本과 商標登錄證明書, 그리고 外國側 當事者和 中國側 當事者 사이의 技術의 特性, 實際價值, 評價基準과 評價同意的 根據를 包含하여, 移轉되는 技術의 完전한 內譯이 合作投資契約을 허가하는 政府機關에 제출되어야 하며 그런 자료는 合作投資契約에 대한 附錄으로 구성된다. 또한 移轉되는 어떤 기술도 허가기관에 제출되어 中國側 동업자를 담당하는 行政機關에 의해 審査되고 許可되어야 한다.

合作投資會社와 締結되는 技術移轉은 다음 要求를 滿足해야 한다 :

- (1) 技術使用料는 公正하고 合理的이어야 한다. 支拂은 보통 特許權使用料로 이루어질 것이며 特許使用料 比率은 國際의인 水準을 超過해서는 안된다. 特許使用料 比率은 生産된 製品의 純 販賣價에 基礎하거나 兩 當事者들 사이에 合意된 합리적인 기준에서 算定될 것이다.
- (2) 兩 當事者 사이에서 다른 방법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技術輸出業者는 合作投資의 製品輸出地域과 數量, 價格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 (3) 技術移轉 契約期間은 일반적으로 10년을 超過할 수 없다.
- (4) 契約이 滿期가 되면 合作投資業體는 技術使用을 持續할 權利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供給者는 合作投資에서 여전히 동업자가 될 수 있다.
- (5) 技術에서 改善된 技術의 交換을 위한 條件은 互惠의이어야 한다.
- (6) 合作投資業體는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供給源으로부터 裝備(設備), 部品, 原料를 구입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 (7) 中國法律과 規則에 의해 禁止된 非合理的인 制限條項이 包含되어서는 안된다.

“合作投資規則”과 “技術導入規則”이 技術移轉에 관련하여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며 兩 規則이 유사한 技術移轉契約에 共同으로 適用될 것이다.

## 第4節 經濟特區와 海岸都市에서의 技術移轉

經濟特區(Special Economic Zones)는 中國의 輸出指向的인 工業化計劃을 重點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1979년에 설치되었다. 目標은 海外 專門知識과 資本을 留置하고 中國의 安定崩壞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였다. 4개의 經濟特區中 셋 - 深圳, 珠海 그리고 汕頭-은 廣東省에 있고 네번째인 廈門은 福建省에 있다. 深圳特區는 香港과 國경으로 인접해있고 特區들 中 최대규모이다.<sup>20)</sup> 中國의 남부에 있는 香港과 近접한 곳에 위치한 特區들의 立地는 中國政府가 香港과 마카오와의 經濟的 關係를 安定化하고 兩 都市 및 타이완에 確實하게 影響을 미치는 것을 希望함으로써 결정되었다. 한편 海南島는 1981년에 經濟特區로 指定되었고 14個 海岸都市들은<sup>21)</sup> 1984년에 開發促進地域(經濟技術開發區)으로 指定되었으며, 위의 4個 經濟特區와 類似的한 土地使用權이 적용되어 왔다.

오늘날까지, 經濟特區는 모든 기대에 부응한 것은 아니며 1986년 초기까지 政治家들의 批判과 再評價의 主題였다. 그곳에는 이제 社會資本支出에 대한 더 심한 통제가 있고 外換均衡을 目的으로 하는 輸出에 대한 強調가 있다. 그러나 과제의 규모를 고려하면 中國의 現代化計劃에서 經濟特區의 지속적인 역할이 확실하게 된다.

1985년에 中國政府는 투자를 經濟特區에 집중하고 네개의 海岸都市들(즉, 대련, 廣州, 上海, 天津)에 外資導入의 最優先權을 주기로 결정했다. 經濟特區와 海岸都市들은 그 도시에 적합한 投資를 誘引하고 調整할 目的으로 각각 形成된 '經濟技術開發區'를 가진다. 비록 '經濟技術開發區'가 미니 '실리콘밸리'와 같은 것은 아니지만 가장 先進的인 技術을 도입함으로써 잘 훈련된 勞動力을 雇傭하며 그 이상의 발전을 促進할 것을 기대하고 技術集約型 生産企業을 그 지역에 誘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1. 深圳의 技術導入 關聯制度

특히 深圳은 經濟法律을 가지고 對外開放 및 先進技術導入을 試圖해왔다. 深圳에 도

20) 深圳 327.5km<sup>2</sup>, 珠海 15.16km<sup>2</sup>, 汕頭 52.6km<sup>2</sup>, 廈門 131km<sup>2</sup>

21) 海안도시들은 大連, 秦皇島, 天津, 煙臺, 青島, 連運港, 南通, 上海, 寧波, 溫州, 福州, 廣州, 湛江, 그리고 北海의 14개 都市이다.

입된 特別制度는 얼마동안 국가적인 수준에서 立法措置할 수 없는 문제들, 즉 技術導入과 對外經濟契約을 다루고 있다. 이들 범위에서 合作投資에 관련된 特別規則은 1984年初에 深圳에 도입되었다.

#### 가. 深圳의 合作投資規則

經濟特區 중 最大規模이며 가장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深圳은 높은 수준의 발전과 投資利益을 구가하고 있다.

經濟特區에 관한 광범위한 法律이 通過되는 동안에, 技術移轉과 관련된 유일한 法律은 “深圳 經濟特區내의 技術導入에 관한 暫定規定”과 “對外經濟契約을 위한 深圳 經濟特區規定”이 있다.<sup>22)</sup> 이들 規定은 유사한 국가적 規定에 앞서 유효하게 되고 規定의 많은 요건들은 국가가 제정한 施行規則에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단지 國家規則으로부터 逸脫한 地域들이 고려되고 있다. 또한 深圳技術規定이 合作投資에 대한 資本寄與로서 移轉된 기술에 적용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 나. 深圳의 技術導入 關聯規定

만일 特許가 허용된다면 特許를 얻은 기술이 移轉되는 곳에서 中國측 當事者は 特許權의 해설서와 적절한 特許證明書を 제공받아야 하고, 그리고 만일 特許가 申請되었다면, 中國측 當事者は 申請進行明細를 포함하여, 應用, 發明解說書와 모든 申請書類, 要約, 圖解와 다른 文書화된 것들을 제공받아야 한다. 特許移轉 證明書는 또한 中國側에 게 제공되어야만 한다. 기술적 발명移轉의 경우에, 中國側 當事者は 設計圖面, 技術規則과 圖表, 기술적 데이터, 生産方向, 書式, 核心裝備, 모델, 샘플, 材料의 目錄, 造作說明書, 品質管理 方法과 生産檢査, 維持方法과 裝備 그리고 관련된 商業情報를 제공받아야 한다. 中國側 當事者が 移轉協定이 發效되기 以前에 흔히 요구하게 되는 公開水準은 交渉過程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한다. 供給者が 일반적으로 실제로 공급된 기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준비되는 한은 本意아니게 製品이나 關聯된 分野에 관한 모든 研究開發報告書에 대한 접근을 本意아니게 許容하게 된다.

22) 兩 法律은 1984년 1월 11일 制定, 公布되고 1984년 2월 7일부터 發效되었음.

供給者は“技術導入施行規則”에 의거해서 기술이 契約에 명기된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음을 보증하도록 요구받는다. “深圳技術規定”은 다음 부가적인 義務를 부과한다 :

- (1) 導入者が 모든 技術과 造作方法등을 熟達하도록 保證하기 위하여 동의한 制限時間 이내에 供給者の 직원을 훈련시켜야 할 것.
- (2) 만일 移轉된 기술이 契約에 明記된 水準에 到達하지 못했을 때 책임을 질 것.
- (3) 供給者側の 失手때문에 製品이 適切な 輸出市場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責任을 認定할 것.

특히 職員訓練과 관련된 실질적인 義務의 부과는 많은 교섭에서 장애로 되어왔다. 供給者は 訓練을 위해서 적당한 技術職員을 지원받기를 주장할 수 있다. 中國內의 사업을 위해서 中國人 社員을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政府가 부과한 不變의 義務이다. 그러나 外國人 投資家가 職員選擇過程에 현저하게 影響力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성공적인 合作投資로 귀결된 사례들이 있다. 예를들어, 몇몇 호텔사업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존의 完全所有 中國호텔로부터 中國人 職員들을 유입하지 않고, 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을 채용해서 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sup>23)</sup> 한 尖端技術産業 合作投資에서 요구되는 숫자의 中國人 職員이 中國側에 의해서 제공되었지만, 外國人 投資家は 特定作業配置의 과정을 돕기 위하여 西歐方式의 心理檢査를 사용하기를 허용받았다.

“深圳技術規定”은 機密維持의 義務가 그런 기술에 접근하는 노동자들에게 부과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深圳에서 署名後에 技術移轉契約은 결정을 통보하기위한 3개월의 期限으로 深圳市의 人民政府에 의한 承認을 요구한다. 그러나, 契約이 기간내에 허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承認되지 않는다. 契約은 承認 즉시 發效되고 承認날짜로부터 5년의 기간동안 履行되지만, “技術導入規則”에 의거한 10년과는 반대로 滿期6個月前에 신청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만일 契約이 承認된지 6개월 이내에 실행되지 않는다면 承認은 무효화된다. 만일 기술이 合作投資業體에 資本持分으로 移轉된다면 契約은 보다 오래 계속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 移轉된 기술은 合作業體의 登錄資本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 供給者에 의해 동일한 양의 現金 혹은 現物과 부합되어야 한다. 만일 技術移轉이 特許

23) S. Hood and A.N. Williams, *Technology Transfer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ong Kong: Longman Group Ltd., 1987.

技術의 移轉이라면 契約은 技術이 合作投資業體에 대한 資本持分으로서 移轉되지 않는 한 特許가 만료될때 만료된다.

“技術導入施行規則”은 詳細한 禁止된 條件目錄을 規定하고 있지만 불공정한 제한을 兩當事者에 가져오고 平等의 原則을 어기는 것에 대한 禁止項目을 유일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러한 條項이 不確實하다면 “技術導入施行規則”에 설명된 條項들이 적용될 것이다.

#### 다. 深圳의 契約關聯條項

“深圳의 契約關聯條項”은 그 장본인을 대신해서 契約을 체결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위임된 仲介者를 특별하게 허용한다. 게다가 兩側은 그들 法人團體書類 및 事業許可書의 寫本과 가장 최근에 會計監査된 재무재표와 제출된 加盟國政府의 許可證 寫本을 서로 제공해야 한다. 이외에도 여러가지의 保證契約이 兩側으로부터 요구될 수 있다.

補償貿易이나 商品의 加工을 위한 技術移轉 契約에서, 契約에 명시된 작업량을 완수한 후 놓고 있는 생산능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經濟特區의 권리를 規定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생산시간이 技術供給者에 대한 義務遂行속에 포함될 것인지 고려하여 수행될 다른 사업활동이 供給者의 요구사항과 방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함이 바람직하다.

契約義務를 위반한 當事者가 손실에 대한 補償責任을 부담하는데 덧붙여, 상품을 공급하거나 혹은 支拂하지 못한 경우에 未拂된 액수에 대해 一日 當 0.1%의 期間超過手數料를 支拂해야 한다. 이것은 年間 36.5%의 期間超過 手數料로 귀결되기 때문에, 供給날짜를 지키도록 保證하거나 어떤 非常時에도 不可抗力 條項으로 擔保될 수 있도록 保險에 부보할 필요가 있다.

만일 한 契約當事者가 義務를 履行하지 못한다면 상대 當事者는 前者의 義務가 보증되지 않는 한 履行을 연기하고 손실에 대한 補償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契約은 단지 당국의 承認으로 변경될 수 있거나 취소될 수 있고 그런 承認이 認可될 때까지는 유효하다. 合作投資의 契約當事者들은 契約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가진다.

契約은 반드시 당국의 承認으로 讓渡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讓渡는 반드시 承認에 의해 효력을 얻을 수 있다. 契約期間은 期間의 終了前 6個月 이내에 신청되어야 하는,

承認에 따른 동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深圳契約規定’에는 法律의 選擇에 관한 條項이 없다. 그러나, 中國主權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合作投資, 協力企業 및 合作探査를 위한 契約과 관련하여 仲裁와 紛爭調整規定이 中國法律과 一致해야 하고 仲裁는 地方仲裁機關 또는 當事者들에 의해 합의된 다른 기관에 의해 中國內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또다른 불확실한 부분이지만 ‘對外經濟契約法’내에 紛爭調整을 위해서 다른 법률을 선택할 수 있도록 許容條項이 있다면, FECL이 다른 契約들과 관련하여 우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록 FECL에서 當事者들이 사용된 각 언어의 구속력을 선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契約書가 中國語와 外國語로 쓰여진다면 ‘中國語 原文이 原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 2. 沿海開放都市의 經濟技術開發區

大連, 廣州, 上海, 天津과 기타 다른 海岸都市는 도시내에 ‘經濟技術開發區’를 설치했다. 그 이름이 함축하는 것처럼, 이들 지역은 技術供給者들에게 優先待遇, 土地使用料, 稅率, 雇傭과 承認過程에 관한 特惠待遇를 제공함으로써 기술도입을 유인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經濟技術開發區의 다수는 거기에서 적용된 규칙의 완전한 세부사항을 공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으나, 다른 지역, 특히 上海는 유용한 법규의 모든 혹은 완전한 범위를 공개하는 것을 꺼려함으로써 몇몇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준다. 대체로 地方의 部分法規는 地域의 既存設備와 行政, 地域內에서의 土地管理와 使用料, 勞動管理 및 事業登錄을 規定한다. 地域內에서의 運營主體는 보통 尖端技術을 사용해야 하며, 土地使用料를 引下받고 關聯勞動規則을 조건으로 하여 지역내의 자신의 勞動力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勞動者들을 解雇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廣州의 ‘經濟技術開發區’에서는, 技術의 導入에 관한 節次들이 公布되었다.<sup>24)</sup> 이 절차들은 “對外經濟契約法”, “技術導入規則”, “深圳技術規定”의 混合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技術移轉契約의 기간은 10년동안 이지만, 深圳技術規定과 類似的한 特許 및 技術開放要件에 따라 좌우된다. 經濟技術開發區에는 (1)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에 기초한 情

24) ‘技術導入에 관한 廣州 經濟技術開發區의 暫定規定’은 1985년 3월 6일에 制定, 公布되었으며, 1985년 4월 9일에 發效되었다. 그러나 이 規定이 공포될 당시는 國家全體的인 技術導入規定이 發效되지 않았다.

報産業과 家庭用具産業; (2) 生物工學에 基礎하는 新開發 食品産業과 製藥産業; (3) 新材料技術에 基礎하는 新開發 天然資源; (4) 에너지 산업 ; 그리고 (5) 에너지 保存技術과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技術을 결합한 新開發 機械및 電氣産業을 위한 技術의 導入이 장려된다.

대련시는 對外經濟契約에 관한 經濟技術開發區를 위한 規則을 공포하였다. 이들규칙이 “深圳契約規定”과 “對外經濟契約法”의 混合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합의에 의한 契約의 제공과 수락에 관련된 상세히 서술된 條項들을 포함하여 많은 새로운 條項들이 있다. ‘經濟技術開發區’規則들의 대부분은 既 開發地域內 당국에 ‘經濟技術開發區’規則들을 解析하는 權利를 준다.



## 第 5 章 海洋開發技術의 對中國 移轉戰略

### 第 1 節 國家間的 技術移轉戰略

#### 1. 國家와 國際技術移轉

技術移轉은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移轉이 촉진되기도 하고 저해되기도 한다. 많은 경우 정치적 목적으로 통제되고 촉진되기도 하는데 그 예증의 하나가 美國의 中東國家에 대한 선별적 技術移轉政策이다.<sup>1)</sup> 美國의 경우 技術移轉에 관한 정책결정시에 주로 고려하는 영역은 美國의 商業利益(commercial interests)을 증진시키는 것, 美國國安보와 外交政策과의 符合性, 효과적인 개발지원 육성 등이다.<sup>2)</sup>

국가간의 마찰로 인해 技術移轉이 저해된 예로는 Brazil의 技術國粹主義(techno-nationalism)에 의한 美國의 정책적 技術移轉 억제를 들 수 있다.

技術導入國의 정책도 역시 技術移轉의 양과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技術導入國의 外國企業에 대한 所有權(ownership right)問題, 國產部品使用規定, 自國技術者 雇傭規定, 投資誘引, 貿易政策, 知的所有權(intellectual property right)問題, 공정한 市場經濟 환경조성 등이 技術移轉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變數들의 예라고 할 수 있다.<sup>3)</sup>

최근들어 技術移轉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技術에 대한 所有權 認定問題인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所有權의 존중은 技術導入國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리라고 본다.

開途國의 정부가 技術移轉의 問題에 개입하는 이유는 대개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技術供給者와 技術導入者간의 契約形態에 관한 것인데 이는 주로 外國企業이 投資持分(equity)을 가지고 경영에 참여하느냐의 여부, 國內의 外國企業이나 共同投

1) OTA, *Technology Transfer to the Middle East*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4).

2) A.F. Millman, "Technology Transfer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Issues and Opportunities,"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s*, No. 613, Washington, D.C., 1983.

3) Charles T. Stewart and Y. Nihei, *Technology Transfer and Human Factors* (Lexington, Mass.: Lexington Books, 1987).

資會社일 경우에 技術導入에 따른 稅制上의 費用處理 問題이다. 둘째는 導入技術의 價格問題이며, 셋째는 移轉技術內容(content)인데 이는 주로 導入된 技術이 어떠한 성격의 것이며 어느 정도의 패키지가 된 것이냐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開發國 政府의 技術移轉에 대한 통제와 합리성은 조세와 관세수입의 극대화, 국내 技術 導入者의 技術移轉에 대한 費用의 최소화, 移轉技術이 가지는 가치의 극대화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投資持分을 가지고 技術移轉을 했을 경우가 持分이 없는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더 많은 技術移轉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고, 新技術의 경우에는 在來技術보다 높은 로얄티와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만 한다는 것이다.<sup>4)</sup>

日本政府가 技術移轉에 대한 로얄티 지불을 최소화하고 유리한 조건을 갖게하기 위하여 日本企業들과 긴밀한 협조를 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Magee가 주장하듯이 인위적인 需要操作으로 인한 價格引下는 일반적인 需要供給의 법칙에서처럼 장기적으로 技術의 供給不足을 초래할 수 있다.<sup>5)</sup>

開發途上國이 移轉技術의 내용과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이들 국가의 技術革新過程에서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거의 대부분이 식민지의 경험을 갖고 있는 이들 국가에서는 독립성이라는 의미는 대단히 큰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移轉技術의 選別(screening)過程에서 輸出의 중요성을 가장 중요시한 결과 導入技術의 輸出規制(export restriction)規定, 生産量 規制(production volume restraints), 價格固定(price-fixing)條項規定 등의 排除를 위해 노력한 반면에 안데안 조약(Andean Pact) 국가들은 주로 導入技術에 대한 로얄티의 한계를 정하는 정책적 고려를 많이 하였다.<sup>6)</sup>

많은 開發途上國들은 그들의 필요에 맞게 선별적인 技術移轉의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독자적인 技術開發을 기치로 해서 開發國에서 개발된 낙후된 技術로 인하여 장기적으로는 海外依存度를 높인 예도 있다. 생산효율이 낙후된 技術로는 國際市

4) J. Farok Contractor, "Technology Importation Policies in Developing Countries: Some Implications of Recent Theoretical and Empirical Evidence," *Journal of Developing Areas*, Vol. 17(July 1983), pp. 499-520.

5) Stephen P. Magee, "Multination Corporations and International Technology Trade", Preliminary Papers for a Colloquiu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D and Returns from Technological Innovation, *National Science Foundation*, 1977.

6) Howard Pack and Larry E. Westphal, "Industrial Strategy and Technological Change: Theory and Reality",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22, 1986, pp. 87-128.

場에서 효과적으로 競爭할 수 없으므로 開途國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技術의 導入을 적극 추진하지 않는다면, 최근의 技術發展의 가속화 경향에 비추어 技術革新史에 있어서 영원한 낙오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다. 그러나 技術開發전에 國內의 技術導入으로 인하여 技術開發能力의 배양가능성이 저해되어서도 안되겠다.<sup>7)</sup>

## 2. 라이선싱 및 外國人直接投資

### 가. 國際間 技術移轉

일반적으로 國際間的 技術移轉은 1)라이선싱 契約의 체결, 2)外國人直接投資의 2가지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技術市場에서는 特許權을 사용할 또는 침해할 권리를 포함하여 設計, 圖形, 디자인과 같은 技術的 情報를 가진 企業과 技術에 대한 指導, 矯正 또는 licensee의 관계자를 훈련시키기 위한 licensee관계자들의 서비스간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로열티지급율을 포함한 協定은 보통 1회의 분리된 技術에 대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契約이 체결되는 것이 보통이다. Wilson(1977)에 의하면 라이선싱은 물리적이고 상품이 덜 복잡하고 技術的 情報가 보다 쉽게 이동될 수 있을 때 보다 일반적으로 행해지지만 耐久財와 같은 복잡한 제품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많은 연구활동이 競爭을 위하여 제품의 모양을 변형시킴으로써 그 결과 다른 企業에 대해 라이선싱할 기회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라고 한다.<sup>8)</sup>

한편 라이선싱協定條件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수단으로 競爭狀態를 반영하게 된다. 즉, Taylor와 Silberston(1973)에 의하면 대부분의 라이선싱은 國內에서 企業間에 이루어지기보다는 국가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 技術을 다른 企業에 라이선싱하기 위해서는 보통 동일제품의 다른 製造業者보다 競爭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하는데 지역적으로 분리된 市場에서 競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製品市場 利潤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라이선싱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sup>9)</sup>

7) P.K. Kohil and M. S. Viridi, "Some Problems of Transfer of Technology from a R&D Laboratory to Industry in a Developing Country", *R&D Management*, Vol. 10, Feb., 1980, pp. 83-86.

8) R. W. Wilson, "The Effect of Technological Environment and Product Rivalry on R & D Effort and Licensing of Invention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59, May 1977.

9) C. T. Taylor and Z. A. Silberston, "The Economic Impact of the Patent

따라서 국가간에 競爭이 높은 産業일수록 關稅나 去來費用에 의한 市場分離程度가 약화되며, 라이선싱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Peck(1976)에 의하면 1960년대 후반에 國際的 라이선스에 대한 로얄티비율이 상승되었다는 것은 技術이 國際間的 잠재적 競爭者를 강화시키게 됨으로써 licensor의 경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10)</sup>

또한 라이선싱 契約條件은 정보에 대한 市場의 불완전성 및 技術市場에 있어서의 競爭狀態를 나타낸다. licensor는 우선적으로 技術的으로 보다 효율적인 移轉을 위해서 그리고 라이선싱협정으로부터의 經濟的 收益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제약 조건 즉, 技術의 용도 및 사용방법, 技術의 거래장소, licensor에 의한 제한된 구매 등을 부과하고 있다.<sup>11)</sup> 한편, licensor는 企業의 핵심적 경영활동에 사용되는 技術 보다는 周邊技術을 라이선스하는 경향이 강하여, 核心技術의 라이선스는 licensee에 대해서 市場制約條件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sup>12)</sup>

라이선싱은 licensee에 대해서는 위험을 수반하지만 자체내의 R&D활동이 부진한 경우, 예를 들어 R&D의 효율적 규모가 효율적인 생산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며,<sup>13)</sup> 또한 技術을 생산하는 것 대신에 技術을 사용하는데 고정된 費用이 소요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licensor가 技術使用料를 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特許權(patents)理論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 준다. 즉, 無形의 知識은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複製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는 발명가의 발명이나 제공한 이론에 대해 獨占을 인정해 주는데 대부분

---

System: A Study of the British Experience," University of Cambridge, Department of Applied Economics, Monograph No. 23,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3, Ch. 7.

10) M. J. Peck, "Technology," in H. Patrick and H. Rosovsky, eds., *Asia's New Giant: How the Japanese Economy Works* (Washington: Brookings Institution, 1976), Chapter 8.

11) D. J. Teece, "The Market for Know-How and Efficient International Transfer of Technology." *Annual American Academic Political Sociology and Science*, November Vol. 458. November 1981, pp. 81-96.

12) M. Casson, *Alternatives to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Macmillan, 1979).

13) S. Herskovic, *The Import and Export of Technological Know-how through Licensing Agreements in Israel, 1966-1974*, (Jerusalem: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National Council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1976).

의 발명가는 또 새로운 발견에 投資하기 위한 利潤動機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발명가의 독점가치는 단순히 법적인 독점을 유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技術적으로 개발하는데 있는데, 여기에서 라이선스를 위한 市場이 개입하게 된다. 즉, 라이선스된 技術의 사용은 licensee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주고, licensor는 로알티로서 그의 技術革新으로부터의 技術使用料를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된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licensor는 正常利潤 이상의 수준에서 licensee에게 라이선스조건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물론, 모든 라이선스된 技術이 독점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競爭은 각 licensor의 이익을 떨어뜨리게 되며, 技術을 개발하고 검증하는데 固定費用을 계속 투입하여 온 licensor의 경우 移轉費用은 증가되는 可變費用과 licensee의 工場稼動費 때문에 점차 감소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licensor간에 競爭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可變費用에 대한 그들의 수익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한편, licensor에 의해 벌어들인 수익이 실제로 감소되는 범위를 측정한 Baranson(1978)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Baranson은 美國 licensor들은 완전히 잠재적인 技術使用料에 의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의 1/3을 효율적인 licensee가 감소시키게 될 것으로 보고 로알티비율을 설정하고 있음을 밝혔다.<sup>14)</sup> Contractor(1980)에 의하면 美國의 대규모 licensor들이 전형적으로 다른 技術提供者들과의 競爭에 직면하게 되며 통계적 분석으로는 라이선스협정에 대한 총수익에 있어서 競爭要素가 負의 效果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非有意의이었다.<sup>15)</sup> 즉, Contractor의 標本企業에 있어서 총수익률이 2-5개의 競爭會社를 가진 경우 34%, 그리고 5-10개의 競爭社를 가진 경우에 10%, 11개 이상의 競爭社에 있어서는 29%로 나타났고, 27%의 총수익률을 기록한 licensor가 獨占企業이었다. 그리고 licensee의 공장규모는 라이선스를 받은 技術로부터 얻을 수 있는 技術使用料에 따라 有意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aylor와 Silberston(1973)에 의하면 로알티비율은 技術使用料에 있어서 고정적인 요소가 확실한 로알티하의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된다고 하였고, 이 로알티비율은 제공된 지식의 양과 費用에 정의 작용을 하고 로알티는 價格非彈力的인 需要函數를 가진 제품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sup>16)</sup>

14) J. Baranson, *Technology and the Multinationals: Corporate Strategies in a Changing World Economy*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1978.

15) F. J. Contractor, "The 'profitability' of Technology Licensing by U.S. Multinationals: A Framework for Analysis and an Empirical Study,"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11, Fall, 1980, pp.40-63.

## 나. 라이선싱과 外國人直接投資間의 選擇

먼저 라이선싱과 直接投資間의 戰略間의 選擇이 이루어지는 過程을 살펴보고, 이 두 전략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 및 이에 대한 政策的 示唆點을 살펴보기로 한다. 17) (그림 5-1)은, 라이선싱 또는 直接投資에 나타나는 國際間 技術移轉의 모형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費用  $C_1$ 과  $C_2$ 의 범위에서 技術提供國의 활동이 전개된다고 가정하자. 이 技術이 海外에 상품화되었다고 했을 때,  $C_1$ 은 이 技術의 매몰된 研究開發費用의 현재가치이며,  $C_2$ 는 실패한 R&D費用을 포함한 技術 및 제품에 대한 總管理費用의 現在價値이다.  $T_1$ 은 다른 나라에 대한 技術移轉費用의 현재가치이며 이 費用에는 상당한 戰略費用이 포함되어 있다.  $T_2$ 는 技術傳授國으로부터 실제로 송금된 技術에 대한 收益의 현재가치로서 契約條件에 따라 라이선싱으로 받든지 또는 直接投資에 의한 株式投資로부터 송금된 配當金의 형태로 받든지 간에 제도적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다. 따라서  $C_1$ 이 초기의 技術生産의 費用이라면,  $T_1$ 은 外國에서 재생산된 費用으로 技術의 可變費用이다. 일단 技術이 移轉되면 제품이 생산되고 R의 수익을 얻기 위해  $C_3$ 의 費用으로 판매된다. 제품수명주기의 過程을 통하여  $R-C_3$ 의 현재가치는 外國으로부터의 技術에 대한 총수익이 된다.

여기에서  $T_2 \leq R - C_3$  라고 가정하면, 이것은 라이선싱 수익 또는 直接投資에 의해 송금된 배당금중에서 技術에 대한 총수익으로부터 생긴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런데 라이선싱과 直接投資間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은 外國으로부터의 純技術利益 ( $T_2 - T_1 - C_4$ )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단순히 直接的인 순 현금수익인 ( $T_2 - T_1$ )에 기준을 두게 되면 전략에 사용된 機會費用을 상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T_2 - T_1$ 은 國際部 또는 라이선싱部에서 계산하고 機會費用  $C_4$ 는 다른 製品部에서 계산함으로써 R&D費用과 간접비간에 2중계산을 하게되기 때문에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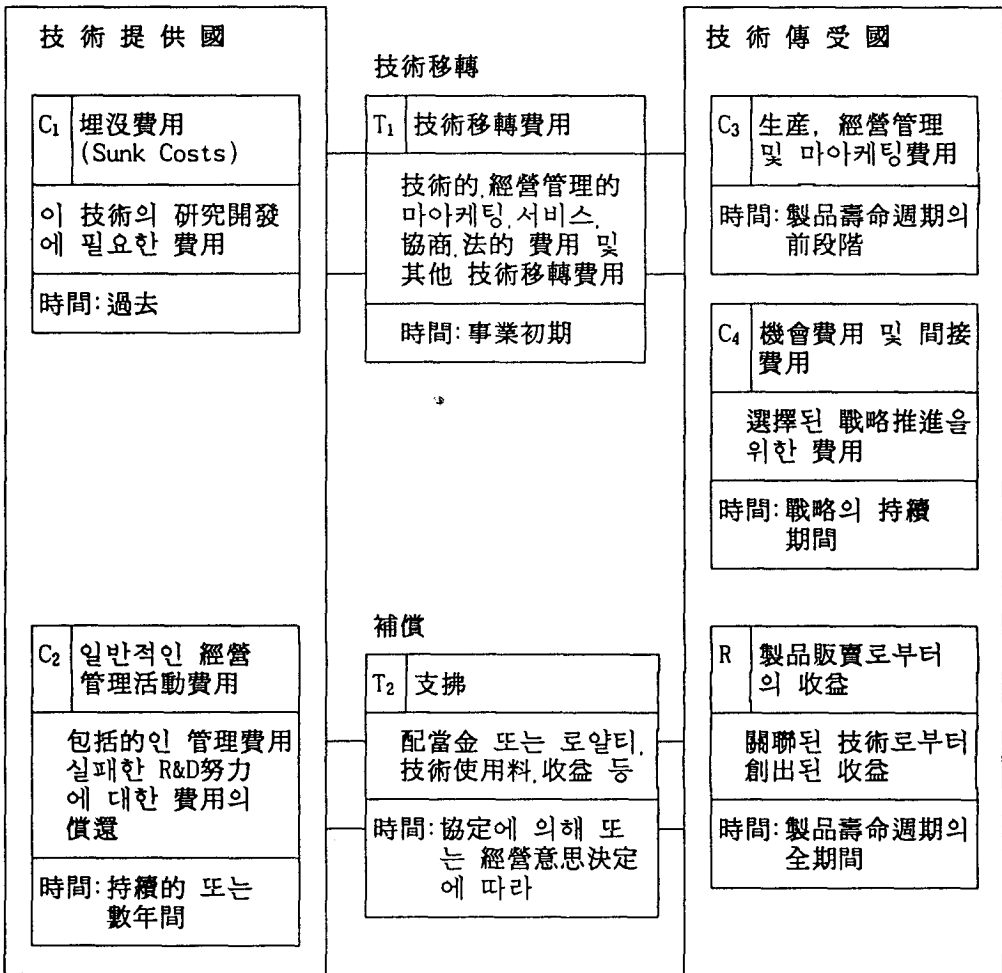
여기서 라이선싱契約으로부터 얻은 위험을 계산한 純技術收益 ( $T_2 - T_1 - C_4$ )는 直接投資로부터의 수익보다 높을 수 없다는 것이 여러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技術移轉費用  $T_1$ 에 대한 이론으로서, Casson(1979)에 의하면 대부분의 경우

16) C. T. Taylor, and Z. A. Silberston, op. cit., 1973.

17) M. Casson, *Alternatives to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New York: Holmes and Meier, 1979).

에 있어서 技術移轉費用은 子會社에 의한 國家간의 技術移轉보다 라이선싱의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즉 技術的 情報은 한 지역에서의 사용이 다른 지역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양이나 이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공공재라 할 수 있지만, 그 移轉에는 費用이 수반된다. 따라서 技術移轉은 단순히 母企業, 안내서나 설계도와 같은 문자화된 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인간에 體化된 지식을 요구하는 移轉을 말하기 때문에 이를 일관적으로 移轉하는 라이선싱費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는 것이다.



자료 : F.J. Contractor, *Licensing in International Strategy : A Guide for Planning Negotiations*, Westport: Greenwood Press, 1985: 16.

(그림 5-1) 라이선싱과 外國人直接投資下에서의 國際的 技術移轉模型

한편, Teece(1976)<sup>18)</sup> 와 Contractor (1981)<sup>19)</sup>에 의하면 측정결과 국가간의 技術移轉費用은 licensee의 技術的 劣位, 技術的 또는 經營管理의 水準 및 節次에 있어서 後發者의 不利益으로 인해 라이선싱보다 높을 것이라고 하였다. 즉, 라이선싱에 있어서 移轉費用  $T_1$  은 技術이 표준화되고, 부호화되고, 흡수하기 용이한 경우에만 直接投資의 移轉費用에 접근하게 된다는 것이며, 또한 技術傳受企業이 技術的으로 技術提供企業보다 상당히 열위에 있을 경우에 移轉費用은 더욱 낮아진다는 것이다.

둘째, 라이선싱 및 直接投資下에서 外國으로부터의 수익  $T_2$  에 대한 이론으로서, licensor의 問題는 技術 自體에 대한 수익은 적정하다고 할지라도 企業의 投資에 대한 정상수익에 있어서 licensee의 지역수익의 몫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장래의 licensee 는 높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고 技術的으로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株式投資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송금수익보다 낮은 라이선싱료를 받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배당금은 공식적인 契約에 의해 제한받지 않고, 한정된 기간도 없기 때문에, 라이선싱에 의한 技術移轉의 경우보다 장기간에 걸쳐서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Casson은 라이선싱에 대한 報償(支拂)에 있어서 또 다른 제약조건을 제시하였다. \*즉, 그에 의하면 여러 국가에서 같은 技術에 대한 라이선싱은 licensor가 모든 licensee에게 균일한 가격으로 제공한다는 압력을 받게 되는 반면에 世界市場에 대해 주식에 의한 直接投資戰略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차등적인 지급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낙관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海外製品市場에 있어서 多國籍企業의 독점력에 대한 이론으로서 생산수익 R에 관한 것이다. R. Caves(1971)<sup>20)</sup>와 S. Hymer(1960)<sup>21)</sup>에 의하면, 多國籍企業은

18) D.J.Teece,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and the Resource Cost of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ambridge, Mass.: Ballinger, 1976).

19) F. Contractor, *International Technology Licensing: Compensations, Costs and Negotiations* (Lexington, Mass.:D.C. Heath, 1981).

20) R. Caves, "International Corporations: The Industrial Economics of Foreign Investment," *Economica*(February 1971), pp. 1-27.

21) S. Hymer, "The International Operations of National Firms: A Study of Direct Investment," (Ph. D. dissertation, Massachusetts Institute of



동일한 품목에 대한 地域的 라이선싱을 가지고 있는 地域 競爭과 비교하여 優秀한 品質, 外國選好, 뛰어난 經營組織 및 國際的 商標認識 등에 의하여 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같은 생산 및 配分費用  $C_3$ 에 대하여 수익  $R$ 은 라이선싱에 의한 경우보다 子會社에 있어서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製品市場에서 얻어지는 수익  $(R-C_3)$ 는 라이선싱에 의한 수익보다 直接投資로부터의 收益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外國으로부터 산출된 純粹한 技術收益  $(T_2-T_1-C_4)$ 는 이론적으로 母會社가 子會社로부터 얻어지는 수익보다 라이선싱에 의한 경우가 더 낮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移轉費用  $T_1$  과 機會費用  $C_4$  를 합한 費用은 항상 높은 반면에 라이선싱으로 부터 얻어진 수익  $T_2$  는 그보다 낮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이선싱은 다음과 같은 특수한 조건하에서 즉, 技術이 명확히 특정지워지고, 간단하며, 성숙되고, 표준화되어진 경우에, 그리고 licensor가 licensee에 비하여 훨씬 우위에 있을 경우, 그리고 라이선싱에 대한 機會費用이 낮거나 '0'일때( 예를 들어 先進國이나 사회주의국가의 市場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수익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 第 2 節 韓國의 對中國 經濟協力 및 技術協力

### 1. 韓國의 對中國 輸出動向

우리나라는 中國과 經濟交流를 시작한 歷史가 짧은만큼 交易, 直接投資, 그리고 技術移轉 등 전반적인 對中 經濟進出 역시 制限的이었다. 그러나 對中輸出에 있어서는 최근 몇년 사이에 刮目할만한 伸長勢를 보였다.

연도별 규모로 보아 우리나라의 對中國 輸出은 1980년 1억\$ 수준의 수출을 기록한 바 있으나 1982, 1983 兩年間은 對中輸出 規模가 1억\$ 미만으로 하락하는 등 對中 輸出去來가 미미하였다. 1988년 한때 17억\$을 輸出함으로써 그 前 해에 비해 약 100%의 伸長勢를 보였는데 이는 아무래도 88올림픽을 계기로 對中國 進出熱氣가 높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88서울올림픽 경기개최는 우리나라의 對中 交流擴大에 있어서 1972년 美·中

---

Technology, 1969).

上海共同聲明이先進 3國에 미쳤던 影響과 같은 象徵的인 意義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中輸出은 1988년 이후 오히려 위축되는데 이는 공교롭게도 1988년 이후 中國이 經濟安定化를 달성하기 위해서 緊縮政策을 채택하게 됨으로써 中國 自體의 輸入需要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1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對中輸出은 貿易代表部 相互開設, 貿易協定 締結, 投資保障協定 協議始作 등 交易促進을 위한 周邊環境이 훨씬 개선됨으로써 또 다시 큰 폭의 伸長勢를 나타내어 23억 7천만\$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對中 主力 輸出商品은 자세히 分類된 資料를 얻기 어려운 관계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經濟企劃院이 발표하는 分類에 따르면 1988년까지는 電子 및 電氣 關聯製品이 우리나라의 對中輸出을 主導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9년 이후 우리나라의 對中輸出을 主導하고 있는 (金額 比重 面) 品目は 단연 纖維類 製品이었다. 同 製品은 1990년 한때 우리나라 對中輸出額의 42.7%를 차지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對中 纖維類 製品輸出은 현재는 그 比重이 다소 줄어드는 趨勢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電子 및 電氣 製品이 1989년과 1990년의 2년간 好調를 보인바 있으나 현재는 退潮狀態에 있는 반면 化學製品이 1991년부터 높은 輸出比重을 나타내고 있으며 鐵鋼·金屬製品 또한 對中輸出 比重이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對中輸出을 主導하고 있는 기업은 역시 8大 綜合商社였다. 삼성을 비롯한 8大 綜合商社는 '91년 우리나라의 總 對中輸出에서 50.8%를 차지하고 있으며 '92년 1/4分期에도 54.4%를 輸出하고 있다는 점이 注目된다.

## 2. 韓國의 對中國 直接投資 動向

한국기업의 對中投資가 活潑하게 이루어지기 始作한 것은 1989년 이후부터 인데 韓國의 資本, 技術과 中國의 勞動力, 資源이 結合된 形態로 推進되고 있다. 中國은 1988년 4월부터 山東 및 遼寧省을 韓國企業의 投資留置 重點地域으로 지정한 바 있다. 韓國에서는 1992년 5월 말 현재 件數로 255件, 金額으로 2억 3,800만달러의 對中 投資事業이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았으며, 1991년부터 對中 投資가 급증하고 있다. 투자규모면에서는 100만 달러 이하가 大部分이나 漸次 大規模化되고 있다(표5-1참조).

<표5-1> 韓國企業의 對中 直接投資 推移(韓銀許可 基準)

(단위: 건, 천 달러)

	100만달러 미만		100-200만 달러		200-500만 달러		500-1,000만 달러		1,000만 달러 이상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85	-		1	1,500	-	-	-	-	-	-	1	1,500
1988	3	-	-	-	3	10,267	-	-	-	-	6	12,273
1989	7	2,006	5	6,450	1	2,100	-	-	-	-	13	11,458
1990	29	2,908	5	6,065	3	6,500	3	16,000	1	17,949	41	57,263
1991	89	10,947	14	22,288	6	16,501	1	6,000	-	-	110	78,235
1992	68		11	13,899	2	5,400	2	12,750	1	19,340	84	76,953
합 계	196	74,673	36	50,202	15	40,768	6	34,750	2	37,289	255	237,682

주: 1) 1992년은 1-5월 실적  
자료: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對中投資를 지역별로 보면 山東省과 遼寧省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黑龍江省, 北京市, 吉林省, 天津市의 순으로 전체 투자의 약 80%이상이 揚子江 이북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纖維, 전기·전자, 신발, 피혁 등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제조업이외 분야에서는 수산업, 요식업에 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표5-2참조).

〈표5-2〉 韓國企業의 對中 直接投資 地域別, 業種別 分布(1992年 5月末 現在)

(단위:천달러)

	산 동 성		요 녕 성		흑 룡 강 성		천 진 시		북 경 시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차금속	1	1,500	-	-	-	-	-	-	-	-
광업	3	1,200	1	102	-	-	-	-	-	-
기계, 장비	4	6,597	-	-	3	2,019	-	-	-	-
기타제조업	18	11,330	17	4,493	6	19,277	2	1,480	7	2,606
농축산업	-	-	-	-	1	1,900	-	-	-	-
목재, 가구	2	500	-	-	2	340	-	-	1	510
무역업	-	-	-	-	-	-	-	-	1	100
비금속광물	1	788	1	200	-	-	1	1,125	-	-
석유, 화학	2	6,826	1	600	-	-	-	-	-	-
섬유, 의류	15	11,472	16	8,560	4	1,170	12	5,055	3	1,129
수산업	6	3,500	-	-	-	-	-	-	-	-
신발, 가죽	7	9,200	7	8,964	3	411	3	7,930	1	3,000
운수보관업	1	500	-	-	-	-	-	-	-	-
음식료품	6	5,823	6	1,325	1	481	-	-	-	-
음식숙박업	-	-	-	-	-	-	-	-	7	22,447
조립금속	12	10,880	6	6,474	3	3,050	4	4,400	1	97
종이, 인쇄	2	1,086	-	-	-	-	1	350	-	-
합 계	80	71,202	55	30,718	23	28,648	23	20,340	21	28,889

자료: 한국은행

### 3. 韓國의 對中國 技術移轉 動向

#### 가. 兩國의 技術開發 比較

##### (1) 技術發展現況

##### (가) 韓 國

韓國의 製造業 生産技術面에서는 國際的인 先進水準을 뒤쫓아 가고 있으나 設計 및 既存素材, 主要部品の 개발에서는 낙후되어 있다. 특히 機械工業과 電子·컴퓨터·半導體分野가 그 典型的인 例라 할 수 있다.

自動車工業의 경우는 아직도 組立段階에 머무르고 있는데 關聯 基礎의 脆弱과 獨資

의 技術開發 能力不足이 가장 큰 隘路事項이며 鍍金, 塗裝, 金型, 熱處理技術도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다. 造船工業의 경우 設計·生産에서는 世界水準이나 要素技術과 管理技術 등이 脆弱한 實情이다. 石油化學工業은 中間體의 生産이 가장 脆弱하고 鐵鋼分野는 高級·特殊鋼의 生産이 不進한 편이다. 纖維工業은 染色, 通風, 抗菌, 防臭, 난연처리 技術이 未治하거나 試驗段階에 있으며 編·織物類는 模倣生産 段階에 있다. 食品加工工業에서는 加工·貯藏處理와 包藏 등의 分野가 脆弱한 實情이다.

#### (나) 中 國

中國에서는 技術革新에 대한 인센티브가 결여되어 技術의 公有概念이 오히려 技術擴散을 방해하고 있다. 全體 製造業技術의 20%는 1960-1970년대의 水準이며 20-25%가 落後되어 있으나 使用可能한 狀態이고 나머지 55-60%는 廢棄處分狀態에 가깝다. 總要素生産性은 1957년 이후 줄곧 停滯되어 왔으며 製品의 디자인도 지난 20여년간 거의 踏步狀態에 있다.

### (2) 技術發展展望

#### (가) 韓 國

韓國은 勞動集約的 “傳統産業”, 資本集約的 “重工業”에서 頭腦集約的·技術集約的 “知識産業”, “輕量工業”으로의 産業構造 改編을 위한 技術開發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특히 에너지 節約型産業을 발전시키고 生産迂廻度を 높이고 部品素材産業 등 基礎産業 關聯技術開發에 힘을 쏟기로 보인다.

分野別로 보면 機械工業은 80년대에 既存技術의 改良, 導入技術의 消化段階를 거쳐 1990년대에는 메카트로닉스, CAD/CAM 油壓技術 등 脆弱 技術部門의 發展段階로 履行할 것이다. 電子工業은 1980년대에 製造技術과 設計技術의 部分的 消化段階에서 1990년대에 반도체 특히 論理回路(logic circuit)의 全體 設計段階로 進展할 것이다. 自動車는 先進技術 消化吸收 段階에서 技術自立段階로 발전할 것이며, 纖維工業에 있어서는 技術受惠國에서 技術供與國으로 전환될 것이다. 鐵鋼工業에서의 技術發展은 2000년까지는 日本式 發展을 계속 踏襲하는 趨勢가 豫想되며 製品生産面에서는 현재의 普通鋼 爲主의 生産體制에서 高級鋼 爲主로 체제를 바뀔 것이며 特殊鋼生産比率은 현재의 3%수준에서 2000년대에는 현재의 先進國 水準인 15%정도로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食品加工業에 있어서는 食品包裝分野, 製造工程의 自動化, 에너지 節約化 및 冷凍冷藏施設의 開發이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나) 中 國

中國에서는 現代化計劃에서 알 수 있듯이 全分野에 걸친 技術改造, 技術導入, 技術開發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에너지, 電子·機械, 既存技術改造産業 및 에너지多消費型 産業을 에너지節約型 産業으로의 轉換을 위한 技術改善이 重視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7次 5個年計劃期間 동안에는 특히 機械·電子分野의 技術開發에 상대적으로 큰 비중이 주어질 것이며 機械·電子産業振興의 立法化가 추진되고 있다. 機械分野에서는 資源開發設備, 에너지再生設備, 冶金設備, 自動車, 其他 에너지節約型 設備技術開發에 중점을 둘 것이다. 電子分野에서는 1미크론 IC, 컴퓨터補助設計, 通信網, 레이더 등이 主要 技術開發分野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尖端分野에서는 2世代 遠隔調整로봇(remote control robot), 新素材, 遺傳工學, 石炭化學, 化學新素材 등이 重點分野로서 개발에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표5-3참조).

<표5-3> 中國의 工業部門別 成長率 展望指標(1986-2000)

	1986 - 1990 <sup>1</sup>	1990 - 2000
중 공 업	7.5	8.1
경 공 업 <sup>2</sup>	7.5	7.9
기 계	-	9.1
화 학	-	8.8
금 속	-	7.0
식 품 가 공	-	8.7
섬유 · 의류	-	7.1
투 자 <sup>3</sup>	60.0	-
수 출	8.0	11.0
수 입	6.2	11.4

자료: 「中國통신」(日本판), 각호

World Bank, *China: Long-term Development Issues and Option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5.

주: 1) 中國의 7次 5個年計劃에 確定된 計劃值임.

2) 1981년 - 2000년간 年平均 增加率임.

3) 7次5個年計劃(1986-1990)期間의 6次5個年計劃(1981-1985)期間 投資累積額 對比 增加率임.

## 나. 兩國間的 技術協力可能性

中國은 1970년대 말 이래 科學技術 現代化計劃을 꾸준히 推進해왔으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우리나라와 技術水準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한단계 앞선 것으로 보인다. 中國은 아직도 第3次 産業革命에 관련된 技術(內燃機關, 化學製品, 發電 등의 技術)을 導入, 擴散해 가는 段階에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 과정을 거의 완결하고 第4次 産業革命의 新技術(半導體, 컴퓨터, 로봇, 通信分野, 레이저, 新合成物質 등의 新技術)을 開發, 吸收하는 段階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2)

中國은 비록 宇宙科學, 미사일 등의 일부 부문에서는 世界 尖端을 걷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新興工業國 및 先進國과의 技術隔差가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2000년까지 技術隔差를 대폭 줄이기 위하여 科學技術 發展戰略에 대한 여러가지 代案을 비교 검토한 바 있다.

첫째 대안은 傳統技術을 발전시켜 상당한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후 尖端技術을 발전시키는 방법이다. 즉 資金과 人力을 우선적으로 傳統技術에 集中시키는 戰略이다. 이 전략은 현재 中國의 科學技術 水準과 經濟能力을 考慮할 때 가장 적합한 방법이나 先進國과의 技術隔差가 더욱 擴大될 것이므로 취할 수 있는 戰略이 못된다고 평가되었다.

두번째 대안은 尖端技術 爲主로 科學技術을 발전시키며 그 결과를 傳統技術에 응용하는 전략이다. 이 방법은 尖端分野에 있어서는 先進國과의 隔差를 줄일 수 있지만 中國의 經濟, 社會, 文化, 教育 등 與件을 고려할 때 적합한 방법이 아니며 2000년까지 工業 總生産 目標의 달성을 어렵게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번째 대안은 傳統技術 爲主로 科學技術을 발전시키되 研究와 技術導入에 있어서는 傳統技術과 尖端技術에 같은 比重을 두는 戰略이다. 中國은 이 戰略이 中國의 현실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고 傳統技術과 尖端技術을 서로 결합하는 “技術複合體”戰略을 추진 중이다. “技術複合體”戰略이란 電子, 情報 등 尖端技術을 傳統技術에 침투시켜 傳統技術의 生産性を 높이려는 것이다.

---

22) 로스토우교수는 1780년대의 綿紡織, 製鐵 및 증기기관기술의 등장을 第1次 産業革命으로, 1840년대의 鐵道 및 製鋼技術의 등장을 第2次 産業革命으로 보고 있다. 盧熙穆, 白權鎬, 「韓·中 經濟構造 比較分析에 따른 經濟交流展望」, 産業研究院 研究報告書 第128號, 1987.

이러한 中國의 科學技術 發展戰略은 상당히 현실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우리의 對 中國 교류에 큰 의미를 갖는다. 中國은 日本이나 美國, 유럽 등 先進國들에서 활용하고 있는 컴퓨터화되고 로봇화된 尖端技術보다 新興工業國의 調和된 技術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中國의 현 經濟·技術水準과 莫大한 勞動力을 고려할 때 自明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保有하고 있는 機械, 自動車, 造船, 鐵鋼, 電子 등 분야의 技術이 中國이 가장 필요로 하는 技術들을 알 수 있다.

한편 中國은 研究開發과 技術導入을 위한 資金調達을 위하여 수출의 확대를 피하지 않을 수 없으며 技術水準의 向上에 따라 輸出品의 品質도 상당히 改善될 것이며 종류도 다양화될 것이다. 따라서 美國, 유럽, 日本 등에서의 韓·中國간의 輸出競爭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世界市場에서의 中國과의 輸出競爭에서 이기기 위해서 뿐 아니라, 中國경제와 相互補完的인 可能性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研究開發과 尖端技術의 導入에 積極的인 投資를 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地理적으로 引接한 中國이 科學技術 現代化에 躡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의 한 단계 앞선 科學技術을 최대한 活用하여 中國과의 經濟協力이라는 큰 물결에 效果的으로 對處해야 할 것이다.

### 第 3 節 韓·中間의 國際技術移轉現況

前節에서 보았듯이 國際技術移轉經路에는 라이선싱(技術輸出), 海外直接投資의 두가지 방법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고, 海外直接投資는 다시 單獨投資와 合作投資의 두가지로 분류된다. 韓國과 中國간에는 이러한 여러가지 技術移轉經路 가운데서 주로 海外直接投資가 많이 이용되어 왔으며 한국으로부터 중국으로의 투자가 거의 전부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기업의 한국내 支社設置가 늘어나고 있는 등 相互 技術協力促進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기도 하다.

#### 1. 韓·中間의 海外直接投資

韓國의 對中國 直接投資는 1989년 13건에 1,146만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92년 上半期에는 111건에 8,920만달러로 증가하여, 件數·規模 兩面에서 '91년 한해의 數値를 超過



하고 있다. 더우기 投資保障協定の 締結(1992. 5)과 修交로 對中國 투자열풍이 불고있어, '93년말에 가면 300건에 약 3억 7천만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표5-4> 韓國의 對中國 直接投資 推移(總投資:韓銀 許可 基準)

	1985-88	1989	1990	1991	1992.1-6	누 계
대북방투자						
건수(건)	7	16	46	124	136	329
금액(백만불)	13.77	18.09	76.65	82.56	123.22	314.29
대중국투자						
건수(건)	7	13	41	110	111	282
(대북방%비중)	(100.0)	(81.3)	(89.1)	(88.7)	(81.6)	(85.7)
금액(백만불)	13.77	11.46	57.26	78.51	89.20	250.20
(대북방%비중)	(100.0)	(63.3)	(74.7)	(95.1)	(72.4)	(79.6)

자료: 韓國銀行 外換管理部 海外投資課

北方政策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88년 7월 이후 '92년말까지 우리나라의 對中國 投資現況에서 나타난 가장 큰 特徵은 地域別·業種別 集中度가 심하다는 점이다. 지역별로는 山東省(95件)과 東北3省(91件)이 1985-1992년 동안 對中國 總投資件數(270件)의 69%를 점하고 있고, 製造業이 전체투자의 90%이상을 점하고 있다.<sup>23)</sup> 業種別로는 纖維, 衣類, 신발, 완구, 皮革, 食品, 電氣·電子등 勞動 혹은 單純技術集約的인 산업이 對中投資의 主流을 이루고 있다. 우리기업의 主要投資動機는 중국으로의 海外生産基地移轉을 통해 生産費를 節減하려는 데 있으며 生産製品의 대부분을 제3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中國 內需市場 進出度는 극히 미약한 편이며, 이는 중국측이 70% 이상의 높은 輸出義務比率과 外換收支均衡義務를 嚴格히 賦課하고 있는 것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한편 19880-1992년 동안에 이루어진 우리의 對中 平均投資規模는 76만달러로 總投資件數의 78%정도가 100만달러 미만의 少額投資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외에도 우리기업은 ① 社會間接資本의 未備, ② 熟練勞動力의 不足, ③ 複雜하고 官僚的인 意思決定構造, ④ 原資材 調達上의 어려움등의 中國內 事情으로 인해 困難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24)</sup>

23) 韓國銀行 外換管理部, 「海外投資統計年報」, 各年版.

24) 金益洙, 「對內外與件 變化와 韓·中 經濟協力の 新構圖」, 對外經濟政策研究院 研究報告書, 1992.

또한 全體投資의 93%를 차지하는 製造業의 경우 中國側의 低廉한 人件費를 活用한 賃加工形態가 대부분이나 本社에서 小數의 技術者가 파견되어 現地從業員들에게 技術傳受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볼때 이는 海外直接投資를 통한 國際技術移轉의 形態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표5-5> 韓國의 對中國 直接投資現況(實際投資基準)

(단위: 건, 천달러)

지역별	업종별	광업		수산업		제조업		기타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중국	북경시					11	7,053	5	22,729	16	29,782
	상해시					5	4,932			5	4,932
	천진시					23	11,705	1	200	24	11,905
	하북성					7	9,687			7	9,687
	요녕성	1	102			54	27,648			55	27,750
	길림성					17	4,431	1	122	18	4,553
	흑룡강					18	14,512			18	14,512
	강소성					12	10,002			12	10,002
	절강성					2	1,834			2	1,834
	복건성					2	3,570			2	3,570
	강서성					1	91			1	91
	산둥성	2	1,000	7	1,472	85	70,506	1	500	95	73,478
	호남성					1	70			1	70
	광둥성					13	12,347			13	12,347
	해남성					1	600			1	600
소계	3	1,102	7	1,472	252	178,988	8	23,551	270	205,113	
동남아	일본					12	2,974	112	124,699	124	127,673
	홍콩			3	3,077	23	21,210	112	65,642	138	89,929
	인도네시아	3	290,606	3	4,295	189	398,920	12	53,736	207	747,557
	기타	2	3,766	11	2,634	304	448,835	77	53,547	394	713,895
	소계	8	295,474	24	11,478	780	1,050,927	321	321,175	1,133	1,679,054
중동	유럽	1	35,864			9	17,881	22	16,140	32	69,885
	북미	3	45,454	2	1,254	51	186,070	115	153,410	171	386,188
	남미	9	114,789	13	29,618	129	891,169	372	882,548	523	1,918,124
	아프리카			50	77,195	93	95,484	22	17,760	165	190,439
	대양주	2	18,374	3	187	12	14,740	14	55,467	31	88,768
	합계	9	70,376	5	4,207	24	17,477	45	82,114	83	174,174
	소계	32	580,331	97	123,939	1,098	2,273,748	911	1,528,614	2,138	4,506,632

자료: 韓國銀行 外換管理部, 「海外投資 現地法人 現況」, 1993.

## 2. 韓·中間의 라이선싱(技術輸出)

韓·中間의 技術協力은 여러가지 障礙로 인해 우리가 中國에 技術을 輸出하는 방향으로만 進行되어 왔고, 中國으로부터의 技術輸入은 公式적으로 단 한건도 없었다. 1988-1992년 기간동안의 技術輸出을 業種別로 보면 紡織·織物이 6件, 精油·化學이 5件, 電子·電氣가 7件, 機械가 17件, 電力이 1件 등 여러분야에 걸쳐 모두 46件的 技術輸出이 이루어 졌고, 그 대부분은 1991년(6件), 1992년(35件)의 2년간에 일어난 것이다.<sup>25)</sup> 1991년 한해동안 中國의 對外技術輸出이 13억달러에 달함을 생각할 때<sup>26)</sup> 宇宙, 航空, 機械, 中醫學, 基礎科學分野에 대한 中國으로부터의 技術輸入 可能性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北方政策實施 以後 현재까지의 추세를 보면, 技術協力은 對中國 技術輸出이 主流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의 對中技術輸出은 주로 消費財輕工業關聯分野에 대한 ① 技術노우하우의 傳授, ② 技術用役, ③ 技術情報·資料의 提供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88-1992년동안 우리의 對中技術輸出은 總 46件이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이 2-3년의 짧은 契約期間을 갖고 있고 주된 協力파트너는 瀋陽(특히 機械分野), 天津, 北京, 上海, 青島 등 한국과 접촉이 많은 大都市에 소재한 기업이다. 그러나 中國의 經濟發展速度와 新技術指向型 外資導入政策에 비추어 韓·中間의 技術協力 增大可能性은 매우 큰 것으로 보여진다.

<표5-6> 우리나라의 對中國 年度別 技術輸出現況

년 도	1989	1990	1991	1992	합 계
건 수	1	4	6	35	46

<표5-7> 우리나라의 對中國 業種別 技術輸出現況

업종	식품	방직·직물	화학 섬유	요업·시멘트	정유·화학	금속	전자·전기	기계	통신	전력	기타	합계
건수	1	6	2	1	5	3	7	17	1	1	2	46

25) 科學技術處, 「技術輸出現況(1978-1991)」, pp.2-8.

26) 李嵐淸(1992), “中國外資形勢和發展趨向”, 「經濟導報」, p.24 參照.

### 3. 韓·中 經濟協力の 展望

앞에서 우리는 韓·中間 海外直接投資 및 技術協力の 現況과 特徵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修交 以後부터 中國의 第8次 5個年計劃(1991-1995)이 끝나는 1995년 까지 兩國間의 直接投資 및 技術協力關係가 어떻게 발전·변모될 것인가를 전망해 보기로 한다.

經濟展望을 하기 위해서는 韓·中 兩國의 經濟政策·體制 등 對內外 環境變化에 대한 基本假定이 필요한 바 이같은 基本假定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中國이 改革·開放을 加速化함에 따라 對中經協 推進에 있어 安定的이고 開放的인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고, 全方位開放政策의 實施와 分權化措置의 持續으로 地方政府와의 經濟協力 必要性이 증가할 것이며, 地域經濟圈 構想이 具體化됨에 따라 進出地域 多邊化의 必要性 역시 증대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中國經濟의 高速成長에 따라 中國 內需市場이 急膨脹할 것으로 우리의 內需市場 進出努力 增大가 더욱 切實해 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에서 보아도 對中國 生産基地 移轉은 雇傭縮小 등 短期的인 弊害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長期的으로는 우리기업의 輸出價格競爭力을 높혀주고 産業構造를 高度化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對外的인 脫冷戰雰圍氣의 持續은 韓·中 兩國關係에 있어 經濟論理의 比重을 더욱 높게 해줄 것이며, 南北韓 經濟交流가 活性化 됨에 따라 中國市場에서 南北韓 共同的利益을 추구하는 形態의 對中經濟協力 必要性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兩國經濟構造가 複雜多岐해지고 環境保護에 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兩國協力分野도 從來의 貿易·直接投資 一邊倒에서 技術協力·資源開發協力·環境保護協力 등으로 多樣化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틀안에서 修交以後 1995년까지 전개될 韓·中 經濟協力關係를 投資·技術移轉 등의 여러분야로 나누어 展望해보면 <표5-8>와 같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앞으로 兩國間의 經濟交流는 量的으로 계속 확대되겠지만 質的으로 고도화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각광을 받지 못했던 科學技術協力·資源開發協力·勞務協力·環境保護協力 등의 分野가 重要한 協力分野로 浮上할 것이라는 점이다. 協力對象業種도 製造業 일변도에서 水産業, 料食業, 宿泊, 金融, 플랜트 등 非製造業(특히 3次産業) 分野로 多樣化될 것이고, 協力規模도 지금까지의 中小企業型 少額 投資進出方式에서 점차 大企業 혹은 第3國과의 共同投資進出이 可視化되면서 점차 大型化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內需市場指向型 直接投資가 증가함에 따라 投

資方式이 현재의 中小企業에 대한 獨自投資主導型에서 大企業에 의한 合資·合作投資主導型으로 바뀔 것으로 내다 보인다. 물론 년도별로 상황이 약간 다를 수 있고 韓·中 兩側의 政策基調가 바뀔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兩國을 둘러싼 經濟環境을 綜合的으로 고려할 때 이같은 多角化趨勢는 不可避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5-8> 韓·中經濟協力關係의 變化에 관한 中短期 展望(韓·中修交以後-1995)

	1988 - 수교	한·중수교이후 - 1995
1. 全般的인 事項 · 主要經協채널 · 經協方向	민간 및 반민간기구가 주도 한국 -> 중국	정부간, 민간혼합 중국기업의 한국진출 확대
2. 直接投資 · 投資企業 · 投資動機 · 投資方式 · 規 模 · 形 태 · 進出地域 · 進出分野 · 進出業種	중소기업이 주도 생산비 절감. 조립가공후 제3국수출형이 주도 제3국을 통한 우회투자 감소추세 직접적인 투자진출 증가추세 소규모(1백만달러 이하) 합작·합작투자 주, 독자기업 증가추세 산동성 등 발해만; 요녕성 등 동북3성 제조업이 주도 섬유, 신발, 봉제, 의류, 식품가 공 등 노동집약적 경쟁력 약화업 종이 주류	대기업의 비중증가 내수시장지향형 및 자원개발형 투자증대 직접적인 투자진출이 주도 대규모투자가 합자·합작형태로 증가 내수시장지향형·자원개발 형 합자·합 작투자와 제3국 수출형 독자투자가 혼재 상해경제권 및 화남경제권으로의 진출지 역 다변화 유통업, SOC, 여행, 음식, 숙박업, 금 융, 플랜트, 자원개발 분야로 다양화 철강, 자동차부품, 전선, 석유화학 등 자본 및 단순기술집약적 업종
3. 技術協力 · 방 향 · 移轉對象技術 · 傳受對象技術 · 방 법	한국 -> 중국 소비재 경공업분야 생산·조립기 술 - 직접투자시 기술이전 수반	한국 <-> 중국 · 섬유·자동차·가전·철강·반도체분 야의 중저급 생산 조립기술 ① 기초과학·우주·항공·생체공학·신 소재등 관련기술 ②군수용산업의 민수전환 ③기술의 상업화 로알티베이스 방식; 순수학술교류; 국제 콘소시엄 형성등으로 다양화

## 第 4 節 海洋開發技術의 對中國協力戰略

海洋科學技術은 單位型 技術이기 보다는 基礎科學과 産業基盤技術이 結合되어 海洋資源開發과 海洋環境保全 能力을 提高시키는 巨大科學, 綜合시스템 科學으로서 關聯産業에의 前後方 波及效果가 큰 동시에 國際性을 갖고 있으며, 電子, 金屬, 機械, 土木 등의 基幹産業技術을 基반으로 한다.

또한 技術開發期間 및 投資懷妊期間의 長期所要, 非營利性, 探查裝備의 巨大性 등으로 國家主導型 事業이라는 점과 폭넓은 地球環境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國際性, 未來時代의 본격적 이용을 추구하는 未來指向性 등이 그 특징이다.<sup>27)</sup>

### 1. 우리 나라의 海洋開發技術現況

海洋科學技術 水準은 水産資源技術의 경우 生産量이나 漁業技術에 있어 先進國 隊列에 있으며, 干拓, 造船, 港灣建設分野도 꾸준한 工業化 施策과 交易量 增大에 따라 세계적 수준에 있으나 이러한 在來産業 技術分野를 제외하고 海洋鑛物資源, 에너지 자원, 海洋空間利用 등에서는 研究初期段階 내지 尖端技術 導入段階로 先進國과 상당한 기술 격차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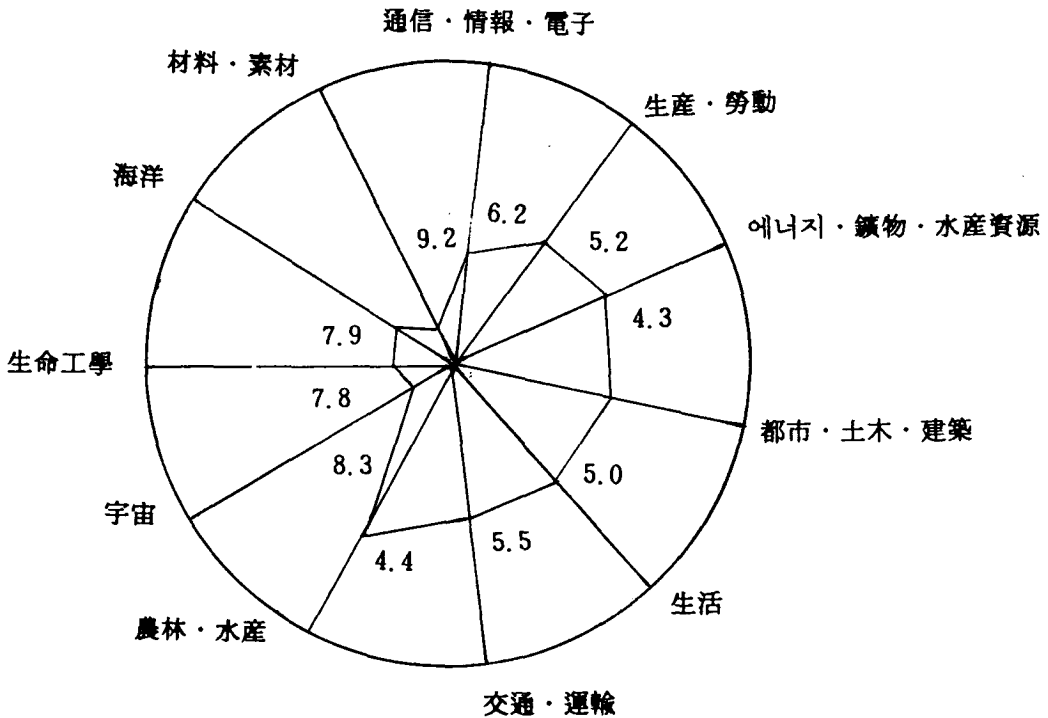
그림을 통하여 對先進國 技術隔差 年數를 技術분야별로 보면, 宇宙, 海洋, 材料·素材, 生命工學 등 尖端産業分野에서는 7-8년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반면 在來産業 分野인 에너지, 鑛物, 水産資源, 土木·建設業 등에서는 약 5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 예) 人工섬 建設技術의 境遇

- 일본은 '82년 평균수심 10m 지역인 고오베에 포트아일랜드(4.36Km<sup>2</sup> 크기) 건설후 최근 동경灣 및 오사카 지역에 大型人工섬 建設中

- 우리나라는 '98년을 목표로 평균수심 15m 지역인 釜山에 人工섬(6.1Km<sup>2</sup>) 建設中

27) 洪承湧 等, "海洋開發基本計劃 樹立에 관한 研究", 韓國海洋研究所 研究報告書, 1991



주 : 上記 年度는 對 先進國 分野別 平均技術隔差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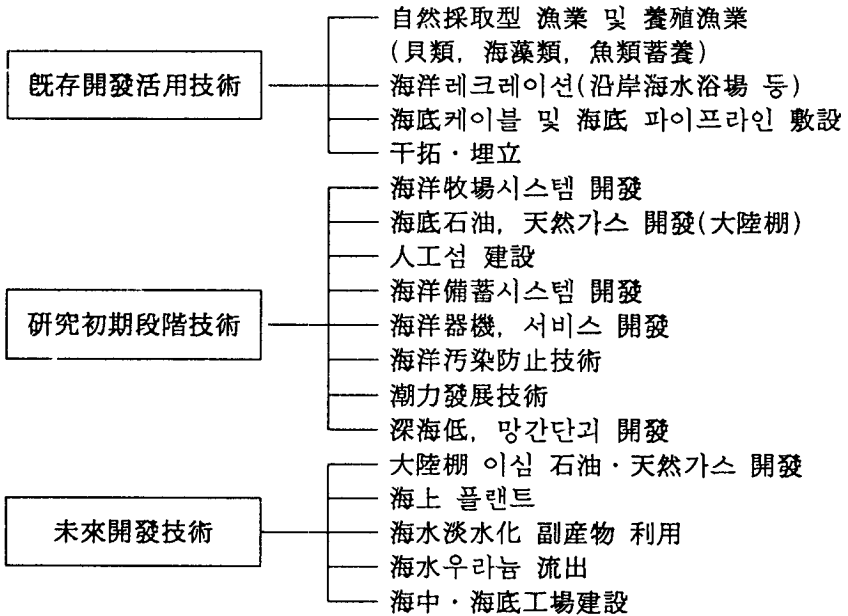
자료 : 李相鎬 外 “未來産業의 發展과 展開方向”, 未來産業研究資料, 産業研究院, 1987. 4.

<그림 5-2> 우리나라의 對 先進國 海洋開發技術隔差(年數)

그러나 현재 公共部門과 民間部門에서 검토되는 R&D投資의 증대와 研究人力의 양성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면 2000년대에는 우리나라도 G-7수준의 海洋科學技術을 保有하게 되어 海洋엔지니어링, 資源探查 및 評價技術, 海洋牧場 造成技術 등을 後發途上國에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우리나라 海洋開發技術 開發段階를 分野別로 예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그림 5-3> 우리나라의 海洋開發技術 開發段階



## 2. 中國의 海洋開發技術導入 有望分野

中國의 海洋資源은 대단히 풍부하며 開發潛在力 역시 막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大陸棚의 수심이 200m 이내이고 海洋面積은 470여만Km<sup>2</sup>에 달하며 海岸線의 길이는 18,000Km에 달하고, 沿岸地域의 地形이 港口條件에 적합한 상태이다. 海洋魚類는 2천여 종으로 이 가운데 經濟魚類는 300여 종에 달하며 미역, 해태 등 수산식물도 풍부한 상태이다. 따라서 어업발전의 자연환경조건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8)

또한 渤海灣과 黃海의 海水에는 각종 화학원소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추출을 통한 이용가능한 자원으로 판명되었다. 그리고 금, 은, 철, 주석, 코발트, 망간 등을 포함한 여러가지 주요 鑛物들이 大陸棚에 대량으로 埋藏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특히 30만Km<sup>2</sup>에 달하는 광활한 大陸棚에는 石油와 天然가스가 대량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이미 확인되었으며 적극적인 試錐作業을 계속하고 있다. 海岸線의 地形과 暖流와 寒流의 潮流狀態가 潮力發電에 대단히 유리하며, 渤海灣과 黃海灣의 干滿差를 이용

28) 程潞 主編 “中國經濟地理”, 華東師範大學 出版社, pp.110-113.



한 潛在的 發電量은 550만KW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韓國은 安定的인 資源供給源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中國 黑龍江省 및 遼寧省 등지의 철강석, 활석, 마그네사이트 등 각종 천연자원의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黃海大陸棚 共同探查 등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漁業合作事業의 擴大改編을 통해 漁業分野 協力を 촉진하고, 農業分野에서의 技術人力交流, 建設業界의 中國市場 進出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黑龍江省的 三江平原에 추진중인 大單位 農業開發, 吉林省의 延邊朝鮮族自治州에 추진중인 大單位 酪農團地, 遼寧省的 地下資源開發, 合作漁撈事業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韓國의 中國內 海洋資源開發事業 參與는 低調한 실정이므로 主要資源의 共同開發 事業을 적극 推進해야 할 것이다.

### 3. 우리나라의 對中國 海洋開發技術 移轉戰略

中國의 海洋産業中에서 우리나라기업이 진출해서 直接投資 및 技術輸出을 통해 技術移轉을 할 수 있는 분야로는 水産業, 造船業, 港灣建設分野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외에도 造船機資材産業, 海運業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前者는 우리나라 기업의 技術水準이 아직 낮은 수준이고, 後者는 製造 및 工程技術分野가 아니어서 技術移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水産業에 있어서 中國은 內水面어업이 크게 발달한 나라이다. 이중 잉어류는 全體水産物中 4大魚種으로 꼽히고 있다. 中國은 그 동안 加工·流通分野의 필요성을 못느꼈으나 최근에는 이의 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中國의 漁業統計는 우리나라와 算出方法이 다를 뿐 아니라 각 省마다 差異를 보이고 있어 신빙성이 별로 없다. 예를들면 貝類의 경우 漁獲後 乾燥한 것으로 計上하는 등 우리와는 다른 방법을 택하고 있다.

中國의 水産物生産量은 '91년 기준으로 1,335만톤으로 세계1위이며, 海岸線은 18,000km, 周邊 淺海養殖 適地面積은 150만ha로서 內水面에서는 연간 5백만톤 이상의 淡水魚가 생산되고 있다. 海面漁業의 主漁場은 南·東 中國海와 渤海灣이며, 이에 從事하는 漁船은 91만 6천척이다. 海面漁業의 主種은 새우로서 연간 약 18만 5천톤 생산에 粗放集約型이다. 이외에도 海藻類인 다시마가 25만톤, 魚類는 능성어, 넙치, 돔 등 7만 5천톤, 貝類는 홍합, 가리비, 피조개가 81만톤의 生産量을 보이고 있다. 中國의 水産業은 漁撈漁業, 養殖漁業 모두 技術水準이 落後되어 있어 우리나라 水産技術의 移轉이 가

능하다. 그러나 水産業自體가 鄉鎮企業 등 集團所有企業形態로 되어있어 規模가 영세하므로 우리나라어민들이 水協中央會의 統制를 받아 地方別 單位水協을 통해 진출함이 바람직하다. 進出分野로는 漁撈技術 및 漁具漁法, 養殖技術, 冷凍·冷藏 및 加工處理技術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造船業은 아직 大型船舶보다는 漁船 등 中小型船舶의 設計·建造技術을 爲主로 進出함이 바람직하며, 港灣建設分野는 土木建設의 特性上 現地技能工의 雇傭을 통한 技術移轉戰略이 바람직하다. 以上과 같은 海洋開發技術의 對中國 移轉戰略을 整理해보면 水産業은 水協組織을 통한 漁民個人 또는 集團의 技術 및 資本投資를 통한 合資 또는 合作投資方式이, 造船業은 라이선싱형태의 技術移轉方式이, 港灣建設分野는 單獨投資方式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4. 對中國 技術移轉의 否定的 側面

우리나라의 對中國 直接投資 및 技術輸出을 통한 技術移轉戰略面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살펴보면 對中直接投資 및 技術수출의 급증이 우리의 國內産業發展 및 國際技術分業構造에 미치는 부메랑效果(boomerang effect)를 생각할 수 있다. 즉 우리 資本과 技術이 中國으로 流出됨으로써 中國의 技術과 輸出競爭力이 향상되고, 그 결과 국내시장으로의 상품·기술이 逆輸入되어 市場秩序를 攪亂시키는 한편, 海外市場에서는 우리의 輸出을 대체하는 '輸出代替效果'(export substitution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OECD등 해외시장에서의 輸出代替效果는 우리의 對中直接投資에 기인한 바는 극히 미미하고, 1989년이후 中國의 新産業政策 實行과 일본, 홍콩, 대만 등 다른 외국기업의 급증에 있다.

둘째, 부메랑 효과는 産業空洞化와 마찬가지로 抽象的으로 概念을 定義할 수는 있지만, 同 效果의 測定이 기술적으로 매우 힘들고, 業種別·分野別로 非對稱的이어서 同 效果를 政策變數化하기 매우 어렵고, 실제 부메랑효과를 구실로 對外直接投資를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 다만 하이테크 關聯技術의 流出과 관련하여 COCOM과 같은 positive 방식의 輸出規制는 가능하다고 본다.

셋째, 설령 測定이 가능하다 할 지라도 이를 정부차원에서 엄격히 통제할 수 있느냐

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기업의 투자는 근본적으로 利潤動機에 基礎하고 있고 投資誘引이 강한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 民間部門에 의한 投資의 흐름의 量과 方向을 統制·調整하는 데는 限界가 있기 때문이다.

내재, 統制可能性(controllability)의 問題를 차치하고라도 부메랑효과를 고려한 海外投資統制의 必要성과 實效성은 投資受惠國(host country)인 중국이 투자국인 우리에게 대해 높은 資本·技術依存度を 갖고 있을 때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대한 資本技術依存度は 아직도 상징적인 수준이며, 한국을 경유하지 않고도 일본·독일·홍콩·대만 등 다른 나라를 통해 원하는 선진기술을 얼마든지 습득할 수 있으며, 중국자체의 기술발전 속도 또한 우리 생각보다 빠르다. 이는 일본과 독일 등이 중국 제조업에 대한 투자에 신중한 자세를 보인 1988년-1990년사이 중국이 해외시장에서 우리의 市場占有率을 급속히 蠶食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일본보다 기술력면에서 뒤진 한국이 對中技術發展 牽制目標을 너무 전면에 내세울 경우 중국을 자극시켜 對中協商力만을 악화시킬 것이고 對中投資 進出이나 中古設備, 陳腐化된 技術의 對中移轉 適期를 놓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부메랑효과는 우리가 중국보다 모든 분야에서 기술이 앞서 있다는 가정 하에서 성립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다르며, 中國은 基礎科學, 宇宙·航空, 精密機械類(通信·運搬裝備 除外), 防衛産業, 一部 基礎科學, 新素材分野에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보다 앞서 있다. 더우기 향후 技術分業時代에서는 기술을 이전해 받기만 하는 식의 발상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없다고 본다. 自國國益優先의 고려하에 취해진 利己的인 對應措置는 단기적으로는 자국에 이익을 가져다 줄지 모르나 곧 상대국으로부터 보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더우기 互惠平等의 원칙을 중시하는 政治大國 中國과의 경제교류에 있어 우리의 본심을 드러내 놓은 것은 장기적으로 양국간 경제관계를 안정적으로 확대하는데 있어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消費財 生産·組立技術을 中國에 이전해 주고, 그와 교환으로 중국으로부터는 우리가 필요한 기술을 전수받는 식의 互惠(give & take)의 논리에 입각하여 對中投資와 技術協力を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技術的 부메랑效果는 雙方向으로 作用한다(Boomerang effect works both ways)는 점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 第 6 章 結 論

本 研究에서는 技術移轉戰略을 라이선싱(Licensing), 海外直接投資 등의 技術移轉經路와 연관시켜서 우리나라의 立場에서 技術移轉對象國인 開發途上國, 그중에서도 특히 최근 우리나라와 經濟協力關係가 증대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내에 強力한 競爭者로 登場할지도 모르는 中國에의 技術移轉戰略을 研究對象으로 삼았다. 또한 아직 直接投資 및 技術移轉事例가 거의 없기는 하지만 黃海를 사이에 두고 存在하는 우리나라와 中國의 地政學的 特性上 水産業, 造船業, 港灣建設分野 등 技術移轉可能性이 있는 海洋開發 技術의 경우를 分析對象으로 하였다.

本 研究에서 技術移轉의 客體가 되는 技術은 製造工程, 生産方法등을 指稱하는 生産 技術뿐만 아니라 經營管理, 노우하우 등을 포함하는 知識이나 情報라 定義된다. 또한 새로운 技術革新이 아닌 外國技術의 導入에는 國家間의 技術協力次元에서 關聯國들의 研究所 또는 企業이 공동으로 研究開發活動을 遂行하는 경우와 한나라의 研究所 또는 企業이 開發에 성공한 技術을 다른 나라의 研究所나 企業에게 傳授하는 形態의 두가지가 있다. 後者の 경우에는 技術이 移轉되는 形態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나, 라이선싱계약에 의한 方式, 直接投資方式(合作投資포함), 그리고 턴키 플랜트(Turn-key Plant) 또는 技術用役契約에 의한 方式이 가장 많이 이용된다.

우리나라의 對中國 技術移轉戰略을 研究하기 위해서는 먼저 中國의 技術導入動向과 導入政策을 分析해야 한다. 먼저 中國의 技術導入動向을 보면 1979년의 改革·開放政策 採擇以後부터 技術導入이 急増하고 있어 近來 中國經濟成長의 主要要因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主要技術導入先은 美國, 日本, 獨逸 등이며 直接投資를 통한 技術導入은 香港, 美國, 日本, 대만 등의 순이다. 中國의 技術導入政策을 보면 技術導入分野는 에너지, 運送, 通信의 社會間接資本 施設, 現在의 中國內 産業構造를 變革시킬 수 있는 尖端技術選好를 政策의 基調로 하고 있다. 또한 모든 技術移轉契約은 對外經濟契約法, 技術取得契約의 施行에 관한 規則 및 節次의 支配를 받으며, 각 經濟特區 또한 自體法令의 整備를 통해 技術導入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海外直接投資 및 技術輸出을 통한 우리나라의 對中國技術移轉은 '91년부터 최근 2-3년간 급증하였으나 纖維, 電子 등 賃金差益을 겨냥한 生産基地移轉으로서 본격적인 産業技術移轉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韓·中國交樹立('92년 12월말)이후 급증하는

兩國의 經濟協力에 비추어 볼 때, 技術移轉도 活性化되리라 展望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海洋開發技術의 對中國 移轉戰略을 수립해 볼 수 있다. 우선 潮力發電, 海洋石油資源開發 등 에너지技術分野에서는 兩國 研究所 또는 企業間의 共同研究開發이 바람직하다고 분석되며, 水産技術分野에서는 우리나라 漁民 및 漁民團體의 中國 水産鄉鎮企業에의 小規模 資本參與 및 技術移轉을 통한 養殖業 및 水産物加工分野에의 合作投資戰略이 유력시된다. 또한 造船業分野에서는 中小型 造船企業의 라이선싱전략이 바람직하며, 港灣建設分野에서는 現地勞動力의 雇傭을 통한 人力訓練方式(人的交流)이 適合할 것으로 豫想된다.

## 參 考 文 獻

權原基, 「國際技術移轉論」, 나남, 1991.

金益洙, 「對內外 與件變化와 韓·中 經濟協力の 新構圖」, 對外經濟政策研究院 研究報告書, 1992.

盧熙穆, 白權鎬, 「韓·中 經濟構造 比較分析에 따른 經濟交流展望」, 產業研究院 研究報告書 第128號, 1987.

尹錫喆, 「技術蓄積·管理論」, 1992.

科學技術政策研究·評價센터, 「技術移轉의 環境과 戰略에 관한 韓·日 比較研究」, 1990.

科學技術處, 「技術輸出現況(1978-1991)」, 1992.

產業研究院, 「中國의 對外開放과 技術導入」, 地域情報시리즈, 1989.

韓國銀行 外換管理部, 「海外投資統計年報」, 各年號.

李承勳, “技術蓄積의 一般狀況”, 「日本의 産業技術」, 서울대학교 經濟研究所, 1992.

洪承湧 등, “海洋開發基本計劃 樹立에 관한 研究,” 韓國海洋研究所 報告書, 1991.

齊藤優, 「技術移轉論」, 東京: 文眞堂, 1980.

程潯 主編, 「中國經濟地理」, 華東師範大學 出版社, 1986.

李嵐清, “中國外資形勢化發展趨向”, 「經濟導報」, 1992.

- Casson, M., *Alternatives to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Macmillan, 1979.
- Contractor, F.J., *International Technology Licensing: Compensations, Costs and Negotiations*, Lexington, Mass.: D.C. Heath, 1981.
- Herskovic, S., *The Import and Export of Technological Know-how through Licensing Agreements in Israel, 1966-1974*, Jerusalem: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National Council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1976.
- OTA, *Technology Transfer to the Middle East*,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4.
- Stewart, Charles T. and Nihei, Y., *Technology Transfer and Human Factors*, Lexington, Mass.: Lexington Books, 1987.
- Teece, D.J.,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and the Resource Cost of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ambridge, Mass.: Ballinger, 1976.
- Caves, R., "International Corporations: The Industrial Economics of Foreign Investment," *Economica*, February 1971.
- Contractor, F.J., "The 'profitability' of Technology Licensing by U.S. Multinationals: A Framework for Analysis and an Empirical Study,"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11, Fall, 1980.
- Contractor, F.J., "Technology Importation Policies in Developing Countries : Some Implications of Recent Theoretical and Empirical Evidence," *Journal of Developing Areas*, Vol. 17, July 1983.
- Kohil, P.K. and Viridi, M.S. , "Some Problems of Transfer of Technology from a R&D Laboratory to Industry in a Developing Country," *R&D Management*, Vol.10, Feb., 1980.



- Kokubun, Ryosei, "The Politics of Foreign Economic Policymaking in China: The Case of Plant Cancellation with Japan," *The China Quarterly*, 1980.
- Magee, Stephen P.,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International Technology Trade," Preliminary Papers for a Colloquiu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D and Returns from Technological Innovation, *National Science Foundation*, 1977.
- Millman, A.F., "Technology Transfer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Issues and Opportunities,"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s*, No. 613, Washington, D.C., 1983.
- Pack, Howard and Westphal, Larry E., "Industrial Strategy and Technological Change: Theory and Reality,"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22, 1986.
- Peck, M.J., "Technology," in H. Patrick and H. Rosovsky, eds., *Asia's New Giant: How the Japanese Economy Works*, Washington: Brookings Institution, 1976.
- Taylor, C.T. and Silberston, Z.A., "The Economic Impact of the Patent System: A Study of the British Experience," University of Cambridge, Department of Applied Economics, *Monograph No. 23*,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3.
- Teece, D.J., "The Market for Know-How and Efficient International Transfer of Technology," *Annual American Academic Political Sociology and Science*, Vol. 458, November 1981.
- Willson, R.W., "The Effect of Technological Environment and Product Rivalry on R&D Effort and Licensing of Invention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59, May 1977.